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제안서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교민단체연대

2021. 12. 10

발간일 2021년 12월 10일

문 의 김현아 사무국장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02-794-6200, cemk@hanmail.net

www.cemk.org

본 공약집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제안서

- 8개 분야 107개 정책 -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교민단체연대

■ 목 차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집>을 펴내며

10

분야	정책명		
1	교육 (14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서열 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 실현 : 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동입시 실시 2. 논술형 수능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종합전형(50%)과 학생부종합전형(50%)로 이원화 ○ 수능종합전형에 교과별 논술형도입 ○ 중앙채점센터 설립 3. 대입에서 성인학습자(만학도) 전형 20% 확대 4. 공모형 학교장 직선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학교 교장 선발관리위원회에서 3배수 선발), 2단계(학교 구성원의 투표로 최종 후보 선정), 교육지원청 심사 폐지 5. 교육지원청의 교육복합지원센터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교육/ 교수학습/ 지역사회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센터 통폐합 및 신설 ○ 교육복합지원센터장(교육장) 공모제 도입 6. 3단계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인수 학급과 전문성 높은 학습지원 전문교사 양성 배치 ○ 학습지원 전문교사 중심의 다중지원팀 운영 7.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방안 보급 ○ 학교 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정서지원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8. 돌봄청 설립 	13
2	노동 (6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기준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체계 밖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확대 ○ 민간부문 정규직전환 실행 3. 기후위기 노동자 보호 : 기금 마련 및 보호법 제정 4. 청소년 노동교육 의무화 	39

1

교육
(14개)

1. 대학서열 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 실현 : 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동입시 실시
2. 논술형 수능 도입
 - 수능종합전형(50%)과 학생부종합전형(50%)로 이원화
 - 수능종합전형에 교과별 논술형도입
 - 중앙채점센터 설립
3. 대입에서 성인학습자(만학도) 전형 20% 확대
4. 공모형 학교장 직선제 도입
 - : 1단계(학교 교장 선발관리위원회에서 3배수 선발), 2단계(학교 구성원의 투표로 최종 후보 선정), 교육지원청 심사 폐지
5. 교육지원청의 교육복합지원센터 전환
 - 생활교육/ 교수학습/ 지역사회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센터 통폐합 및 신설
 - 교육복합지원센터장(교육장) 공모제 도입
6. 3단계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
 - 소인수 학급과 전문성 높은 학습지원 전문교사 양성 배치
 - 학습지원 전문교사 중심의 다중지원팀 운영
7.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일반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방안 보급
 - 학교 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정서지원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8. 돌봄청 설립

13

2

노동
(6개)

1. 근로기준법 개정
 - 노동법체계 밖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확대
 - 민간부문 정규직전환 실행
3. 기후위기 노동자 보호 : 기금 마련 및 보호법 제정
4. 청소년 노동교육 의무화

39

분야	정책명	
3	생태 . 환경 (18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정의법 제정 2.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3.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및 관리계획 전면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직속위원회 구성 ○ 국민적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및 설명 4. 신공항 계획 철회 : 기후정의에 기반 한 국토교통 정책 수립 5. 토지 강제수용법 폐지 6. 그린벨트 재설정 및 생태자연도 1,2 등급부지 개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벨트 재설정 ○ DMZ와 국립공원생태적 보전 가치가 있는 공간에 대한 개발금지 공식화 7. GMO(유전자변형생물) 원료기반 표시제 시행 8. 농민기본소득 9. 탄소발자국 표시제 10. 채식급식 선택제도 11. 자원순환기본법의 사업자 책임 강화 12.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13. 4대강 재자연화 14. 새만금 갯벌 해수 상시유통 및 보전대책 마련 15. 가리왕산 복원 16. 영주댐 철거 	45
4	이주 정책 (10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2. 난민위원회 상설 기구화 3. 난민의 가족결합권 보장 4.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보장 5. 외국인 구금 사법적 심사 적용 6. 이주 구금의 장기화 금지 7. 이주아동 구금금지 8.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에 대한 이의 가능 및 구제 9.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체류 정책 개선 10. 마등록 이주아동 체류대책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64

1.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 임명 의무화
 - 장애당사자 개방형 채용 직위 신설
2.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 장애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의무화
 - 장애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중앙 및 지역 장애주류화센터 신설
 - 장애 분리 통계 생성을 위한 통계법 개정
3. 개인예산 도입 : 이동불편 해소를 위한 이동지원책 마련
4. 장애등록제도 폐지 및 개인별 욕구기반 서비스 도입
 - 장애 특성 및 형평성 고려하여 서비스종합조사표 개선
 - 중앙 및 지역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 할인·감면제도 개편 연구 및 대안 마련
5. 소득보장체계 개편
 - 장애인 기본소득 금액 연구 및 제도화
 - 장애인연금 대상/급여 확대 및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도 개편
6. 장애인 경제활동 차별철폐 : 최저임금 보전제도 시행
7. 장애인 주거권 확보
 -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및 주거정책 5개년 계획 수립
 - 주거공급, 주택개조지원 확대 및 다양한 주거 서비스 모델 개발
 - 장애인의 삶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8.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보호
9.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 단체소송 도입 및 개인진정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 이관(보건복지부 → 법무부)
10. 장애인을 고려한 4차 산업 기술혁명
 - 장애인을 포괄하는 한국판 뉴딜전략 추진 및 역량강화 사업 실시
 - 장애인 접근성 고려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도입
11.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국가 책임제
12. 장애인 맞춤형 평생 교육제도

1. 재무 건전도 개선을 위한 금융복지
 - 등록금, 사회주택, 재교육비 지원
 - 고금리 전환 대출 및 청년층을 위한 채무 조정 제도 필요
 - 재무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의무 시행
2.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진로 교육
 - 진학청년을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 전면 개편
 - 비진학 + 비취업 청년을 위한 생활안정 청년기본소득
 - 비진학 + 취업청년을 위한 고용장려금 확대
3.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대출 제도 개선
 - 무주택 청년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 가구 주거비용 대출제도 개선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4. 청년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 : 기업 지원 및 대학 인턴십 연계
5. 청년노동 119 : 노동권의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6. 문화 자원 불균형 해소 및 문화 창출 지원
7. 세대 갈등 및 참여 불균형 해소
 - 가정, 기업 등 세대 갈등 해결 전문가 의무 도입
 - 기업 내 청년 관리직, 자치단체 내 청년의원 증대 및 수평적 의사소통 기구 운영
8.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 건설
 - 학교/기관/기업/대중매체 성인지 교육 및 성차별 관행 개선
 -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및 처벌 강화
 - 보건의료 정책 기반 및 1인 가구 안전 보장 인프라 마련
9. 정신 및 신체 건강 지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10. 미래세대 생활공간으로써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참여 보장
 - 대북/통일 정책 계획 및 평화와 생활감각 공유의 대화채널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
 -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청년세대 - 국내 청년세대 간 교류 확대
11. 미래세대의 생존공간으로써의 지속가능한 지구 보전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청년세대 공청회 개최 및 의사결정 참여
 - 도시/농산어촌 등 거주지 맞춤형 환경 보전 실천 영역을 제시 및 참여 청년에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 지급

	분야	정책명	
7	토지 · 부동산 (8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보유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철학이 담긴 세금 정책, 토지보유세 ○ 지방과 서울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토대 ○ 토지불로소득 극대화를 위한 가구 분화 및 주택 과소비 방지 2. 공공토지임대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불로소득 유발형 개발을 토지불로소득 차단형 개발로 전환 ○ 북한의 체제 전환 시 적용 가능한 토지제도 롤모델 제시 3. 현재 공공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및 지분공유형 주택 공급 방식으로 전환 4.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5.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 토지불로소득 환수의 당위성 확보 및 공직후보 인재풀 확보 	120
8	한반도 (대북관계/ 통일/평화) (7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화 담론의 개발 및 확산 2. 종전선언 추진 3. DMZ내에 남북경제교류센터(Inter Korean Exchange) 제안 4. 외국인 대상 한반도 평화 투어리즘 5. 한반도 보건의료·재난협력기구 창설(기 제안) 6. 탈북민 소득보전 및 일자리 창출 7. 남북 간 연락 및 송금제도 개선 	129
	참여 그룹 및 전문가 소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3. 기독교법률가회 4. 영등포산업선교회 5. 좋은교사운동 6. 희년함께 7. 윤환철 	140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집을 펴내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각 후보와 정당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후보와 그 주변 사람들의 각종 비리와 의혹 폭로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고 건설적인 정책 경쟁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은 각 후보와 정당들이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들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단지 ‘어떤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방향과 비전을 정비하고 합의하는 기회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숙의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고통 분담과 상생하기 위한 의견을 모아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선 과정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곳곳의 문제들, 즉 남북한 전쟁 위협 해소와 평화 증진,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 이주 난민,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보장제도 확대, 입시고통의 문제 해결,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권리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해결 의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보여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 동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 온 기독교 시민단체들과 기독교전문인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교시민단체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 각 영역에 퍼져 있는 불의와 탐욕, 이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와 실천을 하면서 기독교 내부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 사회 가운데서 신뢰를 확보해온 단체들입니다. 이들이 그 동안의 연구와 구체적인 실천 성과들을 모아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정책들을 8개 분야 100가지 공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공약집은 일차적으로 각 후보 캠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 보다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공약집의 내용은 물론 각 후보들이 우리가 제시한 공약들을 얼마나 채택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전국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일반 시민사회에 공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공약집의 내용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이지만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범국민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내용을 더 다듬어 가고 현실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정 운영의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부디 이 공약집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성숙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나아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국민의 지혜와 합의를 모으는데 소중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 기독교시민단체연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 교육 분야 -

분야	교육
목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대학서열 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 실현2. 논술형 수능 도입3. 대입에서 성인학습자(만학도) 전형 확대4. 공모형 학교장 직선제 도입5. 교육지원청의 교육복합지원센터 전환6. 3단계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7.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8. 돌봄청 설립
단체 및 담당자명	(사)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
전화번호	02-876-4078
이메일	jimgal@naver.com

■ 교육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학교를 교육의 본질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2대 요인은 입시경쟁과 관료주의 구조이다.

입시경쟁은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해 촘촘한 변별을 요구한다. 소위 ‘공정한’ 변별을 위해 객관식 시험 문제에 의존한다. 객관식 시험 문제는 수업의 질을 저하시키고 획일화시킨다. 교사는 창의적 수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배움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상대평가 체제는 바닥을 깔아주는 학생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시험문제는 어려워지고 사교육은 번창한다.

관료주의는 교육이 되든 안 되든 형식적 규칙과 가시적 실적을 우선한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존중하기보다는 교육청의 지시를 이행하고 실적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청이 요구하는 실적과 실질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 정작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사의 에너지가 허비된다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의 근저에는 승진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승진을 매개로 교육청의 지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교육청은 학교로 내려 보낼 예산을 움켜쥐고 전시성 사업으로 치장한다. 그 배후에는 교육청을 평가하는 교육부가 자리 잡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를 만들자!”

교육개혁의 지향점은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이다. 이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입시경쟁과 관료주의 구조 속에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필요는 무시되어 왔다. 각각 독특한 존재인 철수, 영희는 하나의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고유의 숨결을 지닌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각기 다른 배움의 관심과 속도를 가진 개인을 존중해야 한다. 규칙과 실적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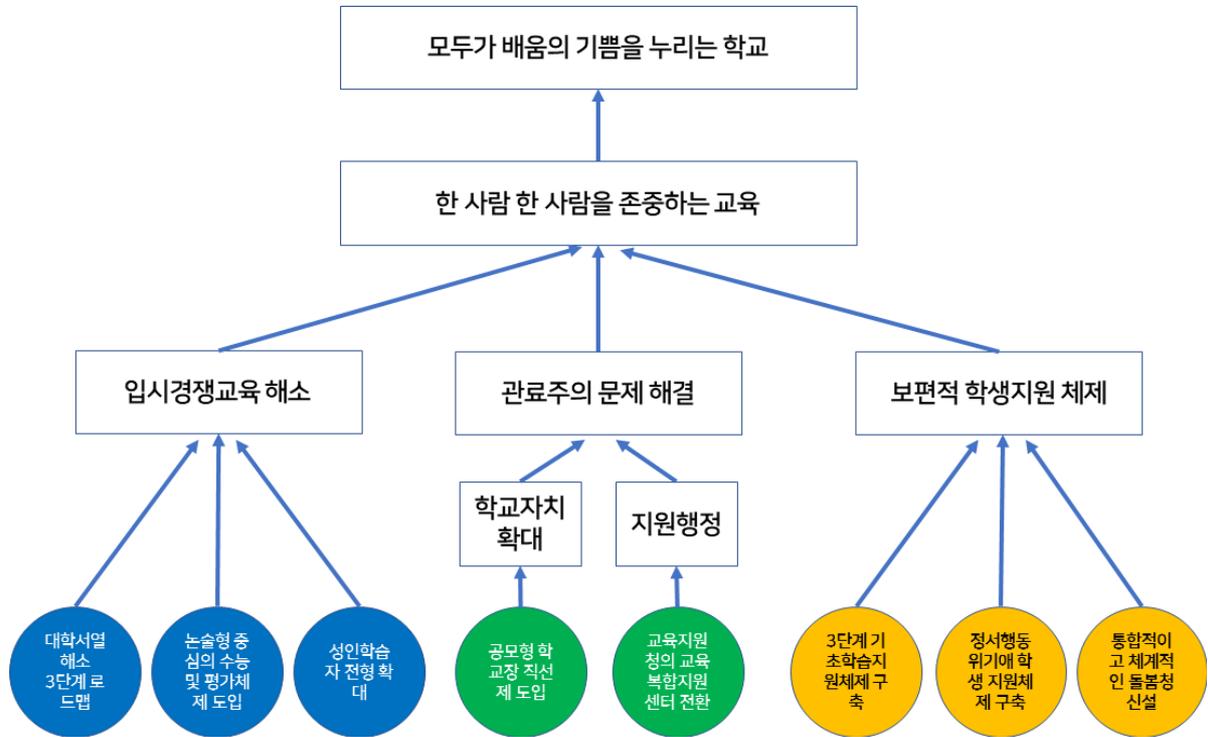
이를 위해 좋은교사운동은 3가지 방향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입시경쟁교육 해소 방안이다. 이를 위해 대학서열해소 3단계 로드맵, 논술형 중심의 수능 및 평가체제 도입, 성인학습자 전형 확대를 제안한다.

둘째, 관료주의 문제 해결 방안이다. 관료주의 문제는 학교 자치를 확대하고, 교육청 행정을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공모형 학교장 직선제 도입, 교육지원청의 교육복합지원센터 전환 정책을 제안한다.

셋째, 보편적 학생지원 체제 수립 방안이다. 보편적 학생지원 체제는 학교 안에서 가장 취약한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3단계 기초학력지원체제 구축,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체제 구축,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위한 돌봄청 신설 정책을 제안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교육개혁의 청사진>

1. 대학서열 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 실현

〈대학서열 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 실현〉

- ★ 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학 입시와 대학체제의 패러다임 전환
 - 공동입시, 참여대학에 대한 전폭적 재정지원, 대학의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대학네트워크 구성
- ★ 참여 대학 범위
 - 1단계(국공립대+일부 사립, 40여개), 2단계(80개), 3단계(160개 대학으로 사립대로 확대)
 - 부실, 비리 사립대학은 제외
- ★ 대학네트워크 입시 방안
 - 대학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한 성적 기준 적용(1단계) →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 성적 기준 적용(2단계) → 고교 졸업 자격에 해당하는 최소 성적 기준을 적용(3단계)
- ★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법제화하고 예산 확보 방안 명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교육 고통의 핵심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교육 고통의 핵심은 대학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습부담 때문임.
 - 한국 학생이 고교 시절을 전쟁터로 인식하는 비율 80.8%¹⁾
 -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자살 충동 원인 1위, 학업문제(38.6%)(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시행)
-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저출생의 원인
 - 과도한 입시 경쟁과 이로 인한 교육 왜곡, 사교육비 증가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저출생 문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저출생의 원인 1위, 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인구보건복지협회 시행 2017 국민 인식조사)
- 대학서열화 문제는 한국의 교육을 왜곡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음. 대학서열화 해소 없이 교육주체의 교육고통 해결, 학교 교육 정상화, 교육의 질 향상 등은 불가능함.
- 입시 경쟁을 과열시키고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도 대학서열화와 그로 인한 고용에서의 차별이라 할 수 있음.

1) 김희삼. (2017).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보고서(연구보고서 2017-06). 한국개발연구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시절을 전쟁터로 인식하는 비율은 한국(80.8%), 중국(41.8%), 미국(40.4%), 일본(13.8%)로 나타났다.

■ 세부 정책 내용

○ 대학서열 해소 정책 추진 방향

- 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학 입시와 대학체제의 패러다임 전환
 - 공동입시 실시를 통해 입학성적에 의한 서열화 해소
 - 참여 대학에게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 대학은 가진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학위나 인증제와 같은 시스템 마련. 여러 대학의 강의를 공동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함.

○ 참여 대학 범위

- 1단계: 국공립대가 중심이 되되, 참여를 희망하는 사립대의 일부를 포함하여 40개 대학 참여로 시작. 궁극적으로 전체 사립대까지 포괄하는 정책임을 표방.
- 2단계: 사립대학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80개 대학까지 참여를 확대함.
- 3단계: 160개 이상의 대학으로 확대하여 대다수의 대학이 네트워크에 포함되도록 함.
-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참여대학을 확대함.
-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립대는 부실, 비리 대학이 아니면서 재정 투명성 등 공공성을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제한.

○ 대학네트워크 입시 방안

- 1단계 :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정원 수준을 고려하여 성적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적용
- 2단계 : 대학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정착되어 감에 따라 2단계에서는 대학 공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만들어 적용
- 3단계 : 고교 졸업 자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성적 요구 기준을 대학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낮추어갈 필요가 있음.
- (가칭)대학입시관리센터를 세워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 기준을 연구·제시하도록 함.

○ 교육의 질 제고 및 재정 지원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학위, 학점교류, 학문 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
- 재정 지원은 실질적 반값 또는 무상등록금과 교수 1인당 학생 수 감축 및 대학 경상비 지원
- 현재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을 끌어올려 교수 학습 환경의 획기적 개선
- 재정지원을 통해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학생들은 부담 없이 대학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은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함.

○ 법제화 및 예산 확보

-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법제화하여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
- 법안에는 예산 확보 방안을 명시
-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는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2/3수준임. OECD 평균 수준의 GDP대비 고등교육 예산만 확보해도 연간 9조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음.

■ 기대 및 파급 효과

- 공동입시 실시를 통해 입학성적에 의한 서열화 해소
- ‘성적 우수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대학에서의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음.

2. 논술형 수능 도입

〈 논술형 수능 도입으로 교육의 대전환을 만들자. 〉

- ★ 수능종합전형(50%) : 논술형 수능+정성평가(면접, 학생부 교과세특)
- ★ 학생부종합전형(50%) : 학생부+면접
- ★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서술하는 교과형 논술
- ★ 초중고 학교 시험도 논서술형 평가체제 구축
 - *선다형 평가는 지식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진단 및 형성평가로 활용
 - *총괄평가는 쓰기, 말하기, 보고서 등의 논술형 평가로 전면 전환
- ★ 단계적 도입
 - 1단계 : 국어, 탐구과목에서 교과형 논술 도입(2028학년도 입시 적용)
 - 2단계 : 2033년 전면 도입(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시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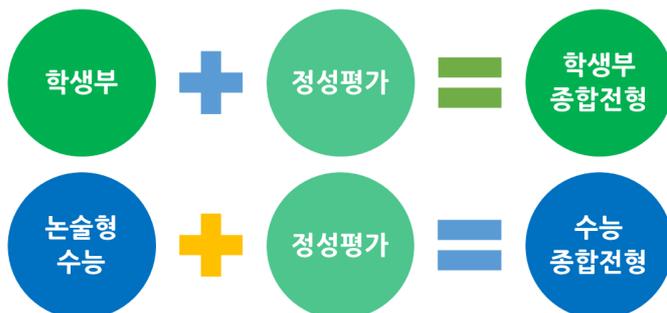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단순 지식이해를 측정하는 평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로의 전환이 미래교육에 요구됨.
- 서열 확인용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견인하는 평가가 교육적 타당성을 갖는 평가라 할 수 있음.
- 선다형 평가는 정답이 있는 지식의 재생산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는 적합하지만, 자신이 배운 지식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고, 표현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 발달과 거리가 먼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선다형 중심의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을 단편적인 지식 축적, 문제풀이 요령 학습에 치우치게 함으로써 학습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 선다형 평가인 현재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는 2015개정교육과정이나 고교학점제, 새롭게 개정될 2022개정교육과정의 방향성과 불일치하고 있음.
- 수능시험, 학교 내신을 위한 지필평가, 수행평가는 평가 내용이나 방식에서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각기 다른 형태의 3가지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주고 있음. 학교시험, 수행평가, 수능이 일관된 형태로 제시되면, 학교 시험과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통합될 수 있음.
- 논술형 수능의 장점
 - 고차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방향에 부합함.
 -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라, 지식을 기초로 문제를 설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쓰기를 통해 표현하는 발산형 평가
 - 2015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그리고 새롭게 개정될 2022 개정교육과정 등 미래교육의 방향에 부합한 평가

- 여러 형태의 성취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함.
 - 교육과정에 표현된 성취기준은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등으로 서술되고 있고, 성취기준에 도달했는가는 지식을 이해했는가 뿐만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생각으로 설명, 비교, 분석, 종합 등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함
 - 논술형 수능은 성취기준에 종합적으로 도달되었는가를 평가하기에 적합함.
- 다양하고 창의적인 고교교육을 촉진함.
 - 선다형 평가는 학습한 결과로서 해당 지식을 이해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실험과 같은 과정의 가치를 떨어뜨림.
 - 선다형 방식의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고교교육이 획일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글쓰기를 위한 고차원의 사고력 발달은 지식 이해뿐만 아니라, 토의·토론, 실험,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함. 수능이 논술과 같은 질 높은 평가로 바뀌게 되면, 수능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고교교육의 다양화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음.
- 활동의 결과로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평가할 수 있음.
 - 학교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수행평가는 학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평가로서 의미가 높지만, 일부 수행평가 방식들은 실제 학습자의 배움으로 연결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음.
 - 활동을 열심히 해서 결국 무엇을 배웠는가를 평가하려면 활동의 결과를 자신의 말과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함.
- 대학의 수용성이 높음
 - 논술형 수능은 외부평가로 실시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음.
 - 논술형 수능은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로, 대학에서도 전형방식으로서 논술형 수능을 선호하고 있음.

■ 세부 정책 내용

- 현행 수시와 정시로 구분된 전형을 하나로 통합
- 대학 입학전형을 수능종합전형(50%)과 학생부종합전형(50%)로 이원화
 - 수능종합전형(50%) : 논술형 수능+정성평가(면접, 학생부 교과세특)
 - 학생부종합전형(50%) : 학생부+면접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새로운 대입전형〉

○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서술할 수 있게 하는 교과형 논술을 수능으로 출제

○ 초중고 학교 시험도 논서술형 평가체제 구축

- 선다형 평가는 지식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진단 및 형성평가로 활용
- 총괄평가는 쓰기, 말하기, 보고서 등의 논술형 평가로 전면 전환

○ 단계적 도입

- 1단계 : 국어, 탐구과목에서 교과형 논술 도입(2028학년도 입시 적용)
- 2단계 : 2033년 전면 도입(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시에 해당)

○ 논술형 수능에 대한 우려와 반론

- 우려1 : 논술형 수능은 논술 사교육 시장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 반론 : 우리 현실에서 어떤 평가도 사교육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어떤 대입제도라도 대학입학 경쟁이 남아있는 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어려운 현실임. 그러나 사교육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장점이 있음. 문제풀이식 수능대비 사교육은 사라지고 논술 사교육으로 전환될 것임. 경쟁을 줄이려는 노력은 대학체제 개편 등의 다른 접근이 필요함.

• 보완책 : 우선 말하기, 쓰기교육을 강화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말하기, 쓰기 등을 충분히 연습하도록 해서 학교에서도 대비할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어야 함. 그리고 고교 수업과 연계된 과목별 논술을 실시하고, 고교 교사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게 해서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우려2 : 학습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 반론 : 쓰기, 말하기를 잘하는 것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고차원적인 역량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어, 학습격차가 더 커질 수 있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말하고 쓰는 능력은 모든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역량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높음.

• 보완책 : 학교에서 잘 준비시켜 주어야 함. 논술형을 당장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도입 일정을 미리 예고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 준비시킬 필요가 있음.

- 우려3 :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

• 반론 : 평가로 측정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사고력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임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영역이므로 100% 객관적인 평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평가자, 채점자의 주관 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

• 보완책 :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한 객관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체조 경기에서 여러 심사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하고 평균을 내는 것처럼 3명 이상의 복수 채점, 채점 기준 조정, 채점 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합의가능한 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험생에게 이의제기의 기회를 부여해서 채점 오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앙채점센터 설립

- 논술형 수능에 대한 채점관리, 채점자 간 다단계 교차 검토, 교사의 채점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앙채점센터(가칭)>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함.²⁾
- 중앙채점센터는 채점관 양성, 채점자 간 교차 검토를 위한 실효적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논술형 수능 체제를 준비해야 함.
- 만일, 2028년 탐구과목에 한해서 논술형 수능을 도입한다면, 최소한 3~4년 전부터 시범적인 모의 논술평가 실시, 채점, 검토 등의 모의실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해법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기대 및 파급 효과

- 지식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적합한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 고차원적 사고력을 키우는 질 높은 교육을 촉진할 수 있음.
- 공정성 패러다임에 묶여 5지선다형 중심의 수능 중심 평가에 묶여 획일화될 수 있는 고교 교육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
- 학교시험, 수행평가, 대학수능시험 등 서로 다른 형태로 치뤄지는 시험을 학교시험, 수행평가, 대학수능이 하나의 형태로 일관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여러 형태의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2) 대입 논술형 수능 체제 설계를 위한 평가 시스템 및 교원양성 프로그램 기초연구 2021. 서울대학교

3. 대입에서 성인학습자(만학도) 전형 확대

〈 아무 때나 공부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만학도) 전형을 확대하자. 〉

- ★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성인학습자 전형을 최소 20%까지 확대(최소 비율 이상은 대학 자율)
- ★ 누구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 지나면, 수능성적, 고교 내신과 상관없이 성인학습자 전형에 지원 가능
- ★ 논술, 면접 등 전형은 대학별 자율 실시
- ★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거나, 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원불가
- ★ 25년 입시에서 3% 도입, 이후 점진적 확대(26년 5% → 27년 7% → 28년 10% → 29년 13% → 30년 15% → 31년 17% → 32년 20%)
- ★ 대학 무상교육, 대학생 생활비 지급, 학습 휴·복직 제도 확대 등의 정책으로 학습 의지 적극 지원
- ★ 고교 졸업 이후 인턴십, 취업, 전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 활동 지원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미래 사회는 언제든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습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이 필수
- 평생학습사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관습을 탈피해서 대학 진학의 시기를 자신의 삶의 패턴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대학입시와 고등학교 교육이 분리되어야 고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음. 초중고 교육 개혁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대학입시 개혁이 동반되지 않아 모두 실패하고 있음. 지금과 같이 대입과 고교 교육이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는 어떤 대입제도의 변화도 왜곡될 수밖에 없고, 대입에 종속된 고교교육의 파행도 해결할 수 없음.
- 저출생 시대에 맞는 대학교육 정책이 필요함. 연간 출생아 숫자가 30만이 안 되는 상황에서, 30만이 넘는 4년제 대학의 학생 수를 확보하려면, 대학 교육을 모든 국민에게 학습의 기회로 보장하고, 연령과 상관없이 대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 세부 정책 내용

- 논술형 수능의 장점
 - 고차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방향에 부합함.
 -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라, 지식을 기초로 문제를 설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쓰기를 통해 표현하는 발산형 평가
 - 2015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그리고 새롭게 개정될 2022 개정교육과정 등 미래교육의 방향에 부합한 평가
- 여러 형태의 성취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함.
- 교육과정에 표현된 성취기준은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등으로 서술되고 있고, 성취기준에 도달했는가는 지식을 이해했는가

○ 성인학습자 전형 운영방법

- 지원자격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3년이 지난 사람 누구나.
- 지원제한 :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나 그만둔 지 1년 또는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전형방법 : 논술, 면접 등 학생을 선발하기 별도 전형 실시(고교 성적과 수능성적 불필요)
- 전형비율 : 2025년 모든 대학에서 입학정원의 3%를 선발(정원 외)이후 점진적 확대(26년 5% → 27년 7% → 28년 10% → 29년 13% → 30년 15% → 31년 17% → 32년 20%)

○ 성인학습자 전형 실시를 위해 동반되어야 할 정책

- 충분한 성인학습자 전형 인원 확보
 - 고등학교 졸업 이전 시기에 있는 학생과 이들의 양육자들에게 충분히 의미있는 수치의 성인학습자 전형 인원을 확보해 주어야 함
 -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지 않아도, 3년 후에 언제든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전형 인원 확보 필요함.
- 무분별한 정원 확대 악용 방지
 - 교육환경의 질을 유지하면서 도입해야 함.
 - 도입 초기에는 정원 외로 해서 3%를 허용하되, 3% 이상은 반드시 정원 내에서 성인학습자 정원을 확보하도록 함.
- 대학무상교육 및 대학생 생활비 지원
 - 독일에서 실시 중
 -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대학 생활 중에 생활비를 지급함.
 - 가정형평과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
- 직장인의 학습을 위한 휴·복지 제도 활성화
 - 직장을 다니다가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위해 다시 대학에 지원하는 일이 가능하려면 학습을 위한 휴직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함.

■ 기대 및 파급 효과

○ 고질적인 대학 입시 경쟁으로 인한 고교교육의 파행을 막을 수 있음.

- 대학입시와 고등학교 교육의 분리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교육학적 타당성만을 고려하면서 교육제도를 개혁해 갈 수 있음.

○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졸업 직후에 바로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학생들은 대입에 대한 고려 없이 흥미와 관심에 따른 학습을 선택할 수 있음.
- 치열한 입시경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여유를 갖고 다양한 도전과 실패 속에 청소년기를 살 수 있음.

○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다양한 삶의 전환 활동을 시도할 수 있음.

- 사람마다 자신을 이해하면서 소질과 적성을 찾고 꿈을 찾는 시기는 다름.
-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여행, 인턴십과 같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군에 다녀올 수도 있음.
- 이 시간 동안 자신과 꿈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면서 인생의 방향과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음.

4. 공모형 학교장 직선제 도입

〈 우리 학교 교장은 우리가 선택한다! 공모형 학교장 직선제 실시〉

- ★ 학교장 공모 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투표에 의해 학교장 결정
-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학교장 후보 3명을 결정.(1단계 심사)
- ★ 최종 후보자 3명이 학교 구성원 앞에서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후보자간 토론회를 갖고, 현장에서 투표 실시(2단계 심사)
- ★ 투표 결과를 구성원별 비율 반영해서 합산(학교급별 학생 비율 차등)
- ★ 교육청은 학교에서 최종 결정된 후보가 결격사유 없을시 임용 제청
- ★ 공모제 확대를 위해 교장 자동 중임을 폐지하고, 1차 4년 임기 이후에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 교장에 임용되도록 함.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학교 구성원이 교장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없음.
 - 학교장의 역량이 부족해서 학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교장 승진 제도 하에서는 학교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교장의 역량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학교민주주의, 학교자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러 한계를 갖고 있음
 - 학교민주주의, 학교자치의 진정한 실현은 학교장을 구성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때 완성. 민주주의는 한 개인에게 권한을 주고, 권한에 대해서 견제하게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함.
 - 교장 임용 단계에서 학교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장의 역량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함.
- 교장 승진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 높음
 -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근무평정 점수와 연수점수, 승진 가산점 등을 합산해서 취득한 교장 자격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교장 승진을 준비하는 과정이 학교장의 역할을 수행할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라는 신뢰가 낮고, 학교장의 자질을 보증해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역량 있는 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음.
 - 학교장 임용 단계에서 교장이 가진 비전과 역량을 학교의 구성원이 검증하게 함으로써 역량 있는 교장이 학교를 경영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함.
-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하는 교직사회 풍토 조성
 -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교육활동의 핵심인 수업과 학생지도를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교사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이 요구하는 행정업무를 잘 수행하는 교사에게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오히려 승진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역량 중심의 교장임용제도를 만드는 것이 교사들을 수업과 학생지도라는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

○ 현행 교장 공모제 운영 방식의 한계

- 현행 운영 방식
 - 1단계 - 학교 심사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공모교장심사위원회(10명~15명)에서 순위를 매겨 후보자 3명 추천
 - 2단계 - 교육지원청 심사 : 교육청에서 구성한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 순위를 매겨 후보자 2명을 교육감에게 추천
 - 3단계 - 교육감이 최종 후보를 정하여 교육부에 임용 청원.
- 현행 교장공모제도의 한계
 -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초빙형이나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부형으로 시행함으로써 교장 승진제도 개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 소수의 인원만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불공정 시비가 발생하고, 특정 단체 출신들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됨.
 - 학교에서 1순위로 결정한 후보가 교육지원청 심사나 시도교육청 심사에서 뒤집히면서 학교자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세부 정책 내용

○ 개념

- 현행 실시되는 교장공모제 심사 과정에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원 전체가 직접 학교장을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원칙

- 학교 구성원 전체가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학교 구성원의 심사 결과를 최종적인 의사결정으로 존중

○ 세부 시행 방안

- 교장선발관리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지역사회 대표를 균형 있게 구성
- 교장선발관리위원회 역할 : 심사 기준 결정, 1단계 심사를 통한 최종 후보자 3인 선정, 교장선발과정의 전체적인 관리 및 안내
- 교장 선발 방식
 - 1단계 - 교장선발관리위원회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최종 후보자 3인 선정
 - 2단계 - 학교 구성원의 투표로 결정
 - ※ 학교 경영계획 설명회, 공개 토론회(학교 구성원 참관) 후 투표 실시
 - ※ 투표 결과를 구성원별 비율 반영해서 합산(학교급별 학생 비율 차등)

학교급에 따른 투표결과 구성원별 반영 비율(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 학부모:교사:학생 4:3:3 - 중학교 / 학부모:교사:학생 4:4:2 - 초등학교 / 학부모:교사:학생 5:4:1
-------------------------------	---

-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해서 교육청에 통보
- 교육지원청의 별도 심사 없이 시도교육청에서 결격사유 심사하고 문제없을 시 임용권자에게 임용 제청 후 임명
- 교장 지원 자격은 현 교장공모제 운영 제도를 준용함.

■ 기대 및 파급 효과

- 학교 구성원이 교장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가짐으로써 역량 중심의 교장 임용 제도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진정한 의미에서 학교민주주의, 학교자치 실현
- 교장 승진제도 개혁을 통해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직사회 풍토 조성

5. 교육지원청의 교육복합지원센터 전환

〈 교육지원청의 교육복합지원센터 전환〉

- ★ 교육지원청의 기존 행정관리 업무 통폐합
- ★ 단위학교의 지원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기존의 지원 체제와 통합
 - 생활교육 강화에 요구되는 지원센터 : 위센터(기존), 학교폭력대응지원센터(기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신설), 위기학생 지원센터(신설)
 - 교수학습 강화에 요구되는 지원센터 : 학습도움센터(기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기존), 체험활동 지원센터(신설),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센터(신설), 평가지원센터(신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 지역사회 연계 강화에 요구되는 지원센터 : 마을교육 지원센터(신설), 거점통합돌봄센터(기존-확대 필요)
- ★ 교육복합지원센터장(교육장) 공모제 도입
- ★ 상향식 교육복합지원센터(교육지원청) 업무 평가제 도입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

-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사업을 줄이는 것임.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업만 제외하고 '0(zero)' 상태에서 교육청이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함.

○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행정

- 교육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지원하기 위함.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함. 실질적인 지원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이 지니고 있는 통제력을 이관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학교폭력 대응 문제의 경우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 위센터는 오래 전부터 학교의 상담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기초학습도움센터 형태의 학습지원 업무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고 교육지원청이 업무 지원에 나설 경우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부분도 생겨나고 있음.

- 고교학점제 운영의 경우, 공동교육과정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교육지원청이 나설 때 훨씬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교사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의 경우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굳이 단위학교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가 될 수 있음.

■ 세부 정책 내용

- 교육지원청의 기존 행정관리 업무 통합
 - 교원 인사관리, 복무관리 등의 업무는 본청에서 총괄하거나 하나의 교육지원청을 광역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여 2-3개 교육지원청의 행정 관리 업무를 통합 추진
 - 기존의 교육장을 교육복합지원센터장으로 개편하여 지원업무를 총괄
- 단위학교의 지원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기존의 지원 체제와 통합
 - 생활교육 강화에 요구되는 지원센터 : 위센터(기존), 학교폭력대응지원센터(기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신설), 정서위기학생 지원센터(신설)
 - 교수학습 강화에 요구되는 지원센터 : 학습도움센터(기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기존), 체험활동지원센터(신설),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센터(신설), 평가지원센터(신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 지역사회 연계 강화에 요구되는 지원센터: 마을교육 지원센터(신설), 거점통합돌봄센터(기존-확대 필요)
- 교육복합지원센터장(교육장) 공모제 도입
 - 단위학교의 학교 운영위원들이 중심이 된 교육복합지원센터장 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행정을 유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장 공모
- 상향식 교육복합지원센터(교육지원청) 업무 평가제 도입
 - 교육복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평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행정 만족도 조사와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단위학교 만족도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업무평가에 반영
- 신설되는 교육복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분야	지원센터	기능
생활교육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공동체 갈등 치유 지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센터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특별지원(상담 및 행동 지원)
교수학습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공동 교육과정 운영, 외부강사 관리 및 교수학습과 평가활동 지원, 학교 밖 학습기관 관리,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 템플릿 제작 보급
	학습공동체 지원센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연구회 지원, 학교 간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운영
	평가지원센터	다양한 수행평가 템플릿 보급, 평가 타당도 향상을 위한 교사지원 활동
	체험활동 지원센터	봉사활동, 진로활동, 체험학습 등을 위한 프로그램, 외부기관, 숙박장소, 강사 정보 제공
지역사회연계	마을학교 지원센터	마을 중심의 청소년 활동을 위한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마을학교 강사 인력풀 정보 제공
	거점통합돌봄센터	학교 공간을 활용한 돌봄센터 운영

■ 기대 및 파급 효과

- 학교 교육의 효율성 증대
- 통제 중심의 관료주의 행정이 지원 중심 행정으로 전환

6. 3단계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

< 3단계 기초학습 지원체제 구축 >

★ 1단계 학습안전망: 소인수 학급과 전문성 높은 교사 양성

- ① 학급당 학생 수 20명 확보
- ② 모든 교사의 학습지원 전문성 향상
- ③ 근거 기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④ 보편적 선별

★ 2단계 학습안전망: 학습지원전문교사와 다중지원팀 중심의 집중지원

- ① 학습지원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심화 연수 실시 또는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임용
- ② 학습지원을 위한 다중지원팀의 내실 있는 운영
: 학습지원전문교사(기초학력전담교사제와 유사) 중심

★ 3단계 학습안전망: 학교 안 5%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 단계

- ①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를 임용하여 일반학교에 배치
- ②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습도움센터와 연계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

-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사업을 줄이는 것임.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업만 제외하고 '0(zero)' 상태에서 교육청이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함.

○ 모든 국민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헌법 제31조 ①항).

-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육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학교 시스템은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많은 허점을 갖고 있음
- 모든 학생들은 학습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 안에 구축되어야 함.
- 학습지원은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권리임.
- 특별히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학습지원 체제가 필요함.

○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은 지원 시스템이 부족함.

- 2017~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3학년에서 학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수준(기초학력)과 4수준(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의 4년 평균은 국어 18.7%, 수학 37.6%, 영어 32.2%로 30명 정원의 교실에서 7~12명은 학습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문화 학생 비율의 증가(2020년 현재 2.75%)
 -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언어 문제로 학교 적응과 학습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이들 상당수는 중도 입국 학생으로 언어에서부터 학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음. 이들 역시 수시로 학습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임.
- 다양한 형태의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필요성
 - 교실 안에서 학습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상당수는 난독, 경계선 지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음
 - 난독, 경계선 지능 등의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받기 이전까지는 이들을 위한 특수교육적 지원은 매우 취약한 형편임.
 -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1.4% 수준으로, 미국이나 핀란드의 7~8% 수준과 비교했을 때 약 6% 내외의 학생들이 특수교육적 필요를 갖고 있으나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SDGs4 실현
 - SDGs4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함
 - 이를 실현하는 것은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과제임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양질의 초중등교육, 특히 문해력 기반의 기초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

SDG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세부목표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 세부 정책 내용

- 학습지원의 원리
 - 기본권
 - 학습지원은 학습자가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은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학습지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개별화
 - 학습지원은 개별학생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전문성
 - 학습지원은 전문적인 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속성 및 강도
 - 학습지원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
 - 근거기반
 - 학습지원은 효과가 검증된 근거 기반의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중층적으로

- 학습지원은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층적인 학습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 조기에

- 학습지원은 부진이 발생한 조기에 개입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 초등3학년 이전의 지원이 가장 적기이다.

○ 3단계 기초학습 지원체제 구축 방안

- 1단계 - 학교 안 80% 학생을 위한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단계

- 학급당 학생 수 20명 확보

기초학력 지원은 맞춤형 개별화 지원이 원칙이다. 과밀학급에서 개별화 지원은 불가능하다. 개별화 지원이 가능하려면 20명 내외의 적정한 학생 수가 필요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한 학급당 인원수가 필요하다.

- 모든 교사의 학습지원 전문성 향상

교원양성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진단과 지원 전략,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현장의 모든 교사들이 학습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근거 기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학습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과가 검증된 진단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이미 실패한 학습법을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학습법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받은 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하면 일상적인 학습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음.(ex. 좋은교사운동 우리반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 찬찬한글, 한글 토박토박 등).

- 보편적 선별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학습지원의 골든 타임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해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과거 일제고사와 같은 경쟁식 줄 세우기가 되지 않으려면 진단의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진단 도구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고, 학생이 직접 문제를 푸는 형태의 진단보다 교사의 관찰을 중심으로 하는 진단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단, 관찰평가라 할 지라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학생들의 한글 습득을 진단하는 한글토박토박은 학생의 응답을 교사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단계 - 학교 안 15% 학생을 위한 집중 지원 단계

- 학교 안 15% 학생은 학교 차원에서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임

- 학습지원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학습지원 전문교사는 3R's 지도방법, 학습부진 진단, 학습동기 유발전략, 다양한 학습장애에 대한 이해, 학습장애별 지원 전략 등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말한다. 학습지원 전문교사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기를 수 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 대상의 심화 연수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1년 이상의 심화 연수를 통해 학생을 지원하는 전문성 및 동료 교사의 학습지원을 장학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른다. 교사연구년제와 연동 추진, 교원자격제도에 전문교사제 도입.

특수교사 자격보유자를 일반학교 에서 임용해서 배치.

특수학교 근무를 위한 특수교사 정원과는 별도로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임용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업무 경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

- 학습지원을 위한 다중지원팀의 내실있는 운영

학습지원 전문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담임교사, 학습보조강사로 구성된 다중지원팀 구성

학습지원전문교사가 다중지원팀 팀장이 되어 학생지원을 위한 개별화 학습지원 회의 주관.
학습 곤란의 원인 분석 및 적절한 지원방안 결정

-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중인 기초학력전담교사제와 학습지원전문교사는 동일 성격의 직무라 할 수 있음.

- 3단계 - 학교 안 5%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 단계

- 학교 안 5%에 해당하는 학생은 다양한 유형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임.
-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가 학교 안에 배치된다면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 학습지원 가능함.
-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습도움센터와 연계할 경우 보다 다양한 형태의 학습 지원 가능. 현재 교육지원청 학습도움센터의 학습지원은 지원 요구 학생이 너무 많은 관계로 10회기 내외의 단기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원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학교에서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지원청의 학습도움센터도 보다 소수의 학생에 집중함으로써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

- 2021년 7월 통과된 기초학력보장법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였음.
-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과거와 같은 진단-보정 중심의 접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장애에 대응하는 특수교육적 접근, 자신이 속한 사회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역량을 키우는 기능적 문해력 향상 등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기대 및 파급 효과

-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복지 시스템 구축
- 개별화 맞춤형 교육 지원체제 구축

7.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및 학교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 일반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방안 보급

- 긍정적 행동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교사 전문성 연수 실시

★ 학교 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1차 선별: 필요시 '교사 보고'에 의한 정서행동 장애검사 실시

2차 중재: 전문상담교사 개별중재 계획 수립

3차 연계: 위기관리 위원회 개최

★ 정서지원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 15년 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1년 이상의 심화연수를 통해 정서지원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 개인상담보다 학교상담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상담교사 역할 확대
- 정서지원 전문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별 학생에 대한 중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ADHD, 우울증, 품행장애 등 지적 어려움이 없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 상당수는 일반학급에 편성됨.

- 우리나라 ADHD 유병률 : 5.9%~13%(2008년 연구)
- 2016년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군 비율 3.2 % vs WHO 아동청소년의 약 20%가 정신질환 보고(격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방치되고 있음을 의미)
-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39.9%, 우울감 경험은 28.2%, 자살 생각률은 13.1%, 자살 시도 경험은 3.0%로 보고(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 학급 내에서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의 숫자 약 10.65%(김태은, 2013)

-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은 교우관계나 학습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교적응의 실패로 이어지면서 학습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 교실이탈, 공격행동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시 학생도, 교사도 도움받을 곳이 매우 부족함.
- 교사는 학생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지 않거나, 학교폭력을 방치하면 직무 위기가 되고, 잘못 막으면 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고위험군 학생의 수업방해가 심각함. 심각한 정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정상 수준에서 있을 법한 문제행동이기보다 정상 궤도를 이탈한 이상행동임. 상담이나 치료 수준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학생이고, 일반학급에 1-2명씩 있으며 늘어나는 추세임. 이는 일반교사의 지도 한계를 넘어섬.

-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경우, 부모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부모가 거부할 경우 달리 대책을 세우기 어려움.
- 정서행동 장애학생에 대한 대응은 특수교육 이외에 다른 법령이 없음. 관련 법이 없으므로 위기관리 대처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도 취약함. 위센터도 학교폭력법에 근거해 있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우선함. 교내 위기관리위원회가 있으나 자살·자해 사안에 한정되어 있고 유명무실함.
- 초등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고, 전문상담교사의 역할도 개인상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차원의 대응에 한계를 보임.
- ‘부모 보고’형식의 정서행동 특성검사의 경우 객관적인 보고가 어려운 관계로 관심군에 속할만한 학생도 관심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세부 정책 내용

- 일반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방안 보급
 - 현재 특수교육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긍정적 행동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학생의 문제 행동을 줄이고 있음.
 - 일반적인 행동수정 이론은 문제행동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등의 증감을 목표로 삼고 혐오 처치를 사용하기도 했던 것에 반해, 긍정적 행동 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PBS)은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선행사건 조정, 대체행동 교수, 후속결과 조정 등을 통한 긍정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환경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맥락적 변인을 강조함.
 - 학교 안에 긍정적 행동지원 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많아질수록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학교의 대응력이 향상될 수 있음.
 - 조기에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협력해서 지원한다면, 향후 학생의 학습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줄여서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음.

○ 학교 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학교 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1차 선별: 필요시 ‘교사 보고’에 의한 정서행동 장애검사 실시
2차 중재: 전문상담교사 개별중재 계획 수립
3차 연계: 위기관리 위원회 개최

- 정서행동장애 검사를 부모보고에서 교사보고로 대체함다.
- 초1~고3학년까지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시행
- 1차 교사보고에서 선별되면 2차 중재를 진행
- 2차에서 담임교사, 학부모, 전문상담교사 관련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별중재 계획 수립하여 긍정적 행동지원에 근거한 개별중재를 학교와 가정에서 일관성있게 지도하고 분기별로 이행약속 확인 및 피드백을 통해 점검
- 2차 개별중재 진행 과정에서 가정의 지속적인 비협조 발생시 3차 연계를 진행
- 3차에서 법적 효력을 갖춘 위기관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명기함으로써, 전문성을 담보로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야 함. 학생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연계 및 대안교육을 찾아야 함.

○ 정서지원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사를 1년 이상의 장기연수를 통해 정서지원 전문교사로 양성하여 배치
- 정서지원 전문교사는 '학교상담'을 주업무로 해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기존의 전문상담교사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상담업무를 하면서, 주업무인 개인상담에 집중
- 정서지원 전문교사는 수업 내 지원이 가능해야 함. 심각한 위기 상황에 SOS를 요청하면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위기학생을 돕기 위해 수업을 관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함.
- 정서지원 전문교사는 긍정적 행동지원 개별중재 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일관성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코치하는 역할을 담당

■ 기대 및 파급 효과

- 정서지원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체제 구축
- 모두를 위한 학습복지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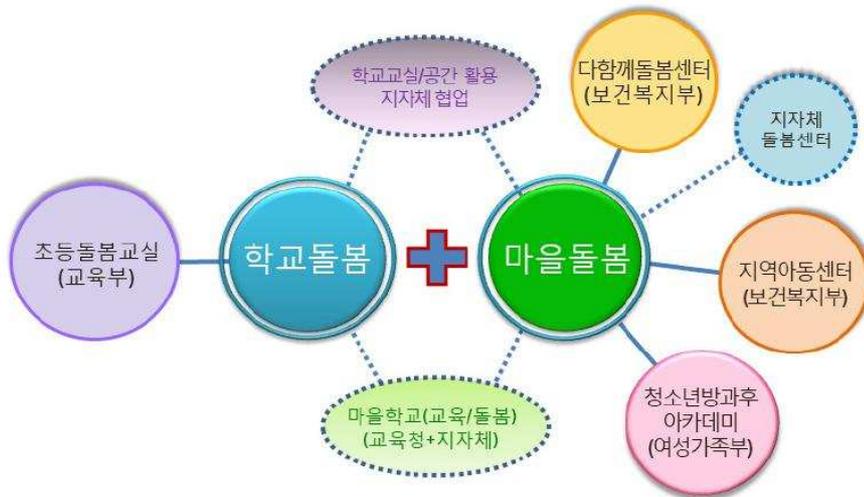
8. 돌봄청 설립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전담 부서 “돌봄청” 신설〉

- ★ 돌봄 업무를 총괄하는 돌봄청 신설
- ★ 돌봄청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을 통합적으로 관리
- ★ 지역사회 내 돌봄 시설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한 홈페이지에서 가정의 현실에 적합한 돌봄 기관을 원스톱으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
- ★ 돌봄 수요에 대한 예측, 돌봄 시설 확충, 돌봄 인력 관리,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질 관리 등
- ★ 향후 청소년 방과후센터와 같이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 확대 발전시킴.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아이 맡길 곳을 찾는 일은 몹시 어려운 일이며, 아이를 맡겨 놓았다고 해도 아이의 안전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음.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이 필요함.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돌봄의 어려움은 저출생 문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된다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임.
-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돌봄 사무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돌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 흩어져 있다.



-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돌봄체계는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다음과 같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돌봄 기관들 간에 정보공유나 협력이 어려움. 마을 안에 돌봄을 맡길 수 있는 남은 자리가 몇 자리나 되는지, 어느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가 없음.

- 돌봄의 수요자가 돌봄 기관에 대한 정보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을 일일이 알아봐야 할 정도로 복잡하고 수고로운 일을 하게 하고 있음.
- 돌봄 기관에 따라 돌봄 프로그램의 질에 차이가 있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도,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음.
- 업무 성격이 다른 교육사무와 돌봄사무가 혼합되는 초등돌봄교실은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행정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돌봄전담사들은 업무의 주체성 약화와 고용 불안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

■ 세부 정책 내용

○ 돌봄청 신설

-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돌봄 업무를 총괄할 돌봄청 신설
- 돌봄청 상급기관을 보건복지부로 하는 안과 교육부로 하는 안으로 나뉠 수 있음. 각 안이 가진 장단점 및 업무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음.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안	교육부에 설치하는 안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행정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돌봄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공급의 70%을 차지하는 초등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초등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공급의 70%를 차지하는 초등돌봄센터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어려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기 어렵다. • 기존에 돌봄 행정을 추진하던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이 어렵다.

○ 돌봄청 설립 방안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안	교육부에 설치하는 안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정부의 돌봄청에 상응하는 돌봄 전담 부서를 지자체에 신설 • 돌봄전담사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사회서비스원으로 채용 • 초등교실에 초등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과 돌봄전담사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에 돌봄행정 전담 조직 신설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센터 관리 • 초등교실에 초등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과 돌봄전담사 파견

○ 돌봄청의 역할

- 돌봄의 수요 파악, 공급 관리, 인력 관리
- 지역사회 내 돌봄 시설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 -->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돌봄 정보 파악, 원스톱 신청,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수요에 대한 예측, 돌봄 시설 확충, 돌봄 인력 관리,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질 관리, 셔틀버스 운영 등

- 돌봄 전문가 양성 및 돌봄전담사 교육 관리
- 돌봄의 목표를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전인발달을 지원하는 것에 두고, 발달단계에 맞는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
- 향후 청소년 방과후센터까지 포괄하여 돌봄과 청소년 여가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로 확대 발전시킴.

○ 초등교육과 돌봄시설의 연계

- 초등학교 가까이에 초등돌봄센터 설립 → 방과후에 안전하게 돌봄센터로 이동할 수 있게 함.
- 초등돌봄센터 부지 또는 건물 확보가 어려울 경우, 초등학교 교실 공간에 초등돌봄센터 설립.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는 돌봄청이 담당
-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셔틀버스 운영
- 초등돌봄센터장 임용
 - 역할 : 돌봄과 방과후 학교 업무 총괄, 돌봄전담사, 방과후 강사 인력관리, 프로그램 관리
 - 돌봄전담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센터장을 임용하고 현장에 배치

■ 기대 및 파급 효과

-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 운영으로 촘촘하고 질높은 돌봄 프로그램 제공
-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함으로써 일-양육 병립 환경 제공
-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질관리를 통해 아동인권 친화적 돌봄 제공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 노동 분야 -

분야	노동
목차	1. 근로기준법 개정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 기후위기 노동자 보호 4. 청소년 노동교육 의무화
단체 및 담당자명	영등포산업선교회 (송기훈 사무국장)
전화번호	02-2633-7972
이메일	ydpuim@gmail.com

■ 노동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들이닥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는 IMF체제를 맞이하게 하였고, 정규직이 아니라는 신조어인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실업자들은 거리에 내몰려 노숙인이 되었으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왜곡되어 짜여진 고용구조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소득격차의 증가, 대량해고의 발생률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률을 더 높이게 되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만큼 발전된 정보화 시대를 지나며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의 문제, 기후위기 속에서의 노동의 문제 등 새롭게 다가오는 세계노동시장의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포함한 ‘일자리를 만드는 대한민국’을 공약 1호로 내걸었다.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항 안 노동자 84.2%가 비정규직인 기형적인 노동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회사 소속이거나 용역업체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구직 희망자 간의 갈등만을 낳았을 뿐 현실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기업의 경우 사정은 더 열악하다.

또한 이미 다가온 기후위기 앞에서 현재의 산업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석탄, 석유 중심 산업들은 빠른 전환을 요청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석탄-석유 산업의 규제가 약한 곳으로 공장과 산업단지의 이주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계속되는 환경파괴를 막아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 노동현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에서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인식은 희박하다. 노동사회에 처한 위기를 바꾸려는 노동조합 운동들은 ‘귀족노조’라는 인식에 묶여 대중성을 잃어버렸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노동에 대한 교육은 기초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학생들은 노동, 노동자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 없이 노동시장에 내던져 진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후위기 속 노동자 보호, 노동교육의 현실화 등 현재의 노동 상황에서 개혁이 절실한 부분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려 한다.

1. 근로기준법 개정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고용형태 다양화
 - 디지털정보기술의 발전이 디지털플랫폼과 앱(app)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출현시킴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노동 형태가 확장
 -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 등장하며 노동법체계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 증가
 -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들 증가
-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대한 논쟁
 -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함으로 노동자 권리보호가 어려움
 -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낮은 과태료 수준의 처벌

■ 세부 정책 내용

- 노동법체계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제정
 - 플랫폼 노동자, 돌봄 노동자, 가사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제정
 - 노동자성을 밝히기 위한 종속성 판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선
 -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보장
 - 법정근로시간과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육아휴직 등 보장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기대 및 파급 효과

-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
- 새로운 노동 형태로 노동법 밖에서 일어나는 착취 구조를 와해시킴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한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한계
 - 고용안정 우선 정책으로 과도한 차별을 합리적 차이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 실패
 -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공무직 전환과 자회사 중심의 전환
 -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리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민간위탁분야는 정규직 전환여부를 개별 기관의 자율성에 맡김으로
 -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지 못한 정규직 전환
 - 임시·일용직의 증가
 -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의 노동조건 격차의 심화
 - 전체 비정규직 규모 증가
-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필요
 - 고용안정률을 높이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
 -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로 상징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개혁 필요
 -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일어나는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세부 정책 내용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확대
 -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는 소수의 기관들을 조사하여 정규직 전환 추진
 - 공공부문에서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비정규직 고용 사전심사제를 철저히 운영
 - 자회사의 전환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조사하여 개선
 - 민간위탁분야 정규직전환 의무화 추진
 - 현행법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행정 실행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대신하지 않도록 규제 마련
- 민간부문 정규직전환 실행
 - 원청 직접고용 의무화 단계적 추진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노사에게 정보 제공, 자문, 교육 등을 지원
 - 근로감독을 통해 법적 고용관행을 개선

■ 기대 및 파급 효과

- 직접고용을 통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 보호의 의무 강화
-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완화, 노동인권 증대
-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증가로 조직몰입, 서비스지향성, 직무만족 등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3. 기후위기 노동자 보호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에서 석유, 화학, 원자력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해 석유, 석탄산업 등 많은 공장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저비용 국가들로 공장이 이전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 기후위기 대량실업 상황 보호
 - 이미 다가온 기후위기 앞에서 현재의 산업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석탄, 석유 중심 산업들은 빠른 전환을 요청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 전세계적으로 석탄-석유 산업의 규제가 약한 곳으로 공장과 산업단지의 이주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계속되는 환경파괴를 막아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합 필요
 - 기후위기 해결과 실업, 산업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동조합과 환경운동이 대립해야 하는 상황 발생
 - 노동운동이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현실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합이 필요하다.

■ 세부 정책 내용

- 전환 노동자를 위한 기금 마련
 -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상, 교육, 재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기금 필요
- 기후위기 노동자 보호법 제정
 -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고용 제공
 - 실업보험을 통한 수입의 보전
 - 공공부문/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육성을 통해 공동체 지원
 -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
 -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교육 및 재훈련의 기회 제공
 -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위한 연구 개발
 - 지속가능한 산업과 서비스를 위한 공공 투자 기금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 기대 및 파급 효과

- 기후위기 노동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실업 및 사회 위기 발생을 줄인다.
-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대립점을 감소시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운동을 이끌어낸다.

4. 청소년 노동교육 의무화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불온화 하는 사회풍토
 -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 노동인권 감수성 부재로 나타나는 노동의 물질화
 - 교육수준별 서열화를 통한 노동의 차별
- 형식적 노동교육
 - 학교 교사들의 낮은 노동인권교육 수강률
 - 부족한 노동관련 교육 시간, 내용
 - 일부 교과서들에 나타난 노동 현실의 왜곡된 사례 존재
- 10대 노동권 침해 현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 등의 문제
 - 폭언, 폭행에 노출
 -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증가

■ 세부 정책 내용

-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의무화
 - '2022 국가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노동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 주관 기구 지정
 - 학년별 체계적인 노동교육 진행
 - 이론적 교육과 실제 사례를 통한 배움을 병행하여 진행
 - 노동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 청소년 노동교육에 대한 법령 제정
 - 청소년 노동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
 - 노동교육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전문가 양성, 교육 표준안 개발 및 보급 기준 마련
 - 청소년 노동교육 의무화를 반영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소년들의 건전한 노동관 확립과 안전한 근로조건에서 정당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 안에 팽배한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 생태·환경 분야 -

분야	생태·환경
목차	1. 기후정의법 제정 2.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3.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및 관리계획 전면 재검토 4. 신공항 계획 철회 5. 토지 강제수용법 폐지 6. 그린벨트 재설정 및 DMZ와 국립공원 생태자연도 1,2 등급부지 개발금지 7. GMO(유전자변형생물) 원료기반 표시제 시행 8. 농민기본소득 9. 탄소발자국 표시제 10. 채식급식 선택제도 11. 자원순환기본법의 사업자 책임 강화 12.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13. 4대강 재자연화 14. 새만금 갯벌 해수 상시유통 및 보전대책 마련 15. 가리왕산 복원 16. 영주댐 철거
단체 및 담당자명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임준형 간사)
전화번호	02-711-8905
이메일	greenchurch@hanmail.net

■ 생태·환경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태 위기 앞에서 인류는 일종의 전환기에 놓여있으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허상에 취해 지구의 경고를 무시해온 결과이다. 과학자들은 임박한 위기가 결국 인류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며,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었을 테지만 그간 정치는 변죽만 울리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에 일조해왔다. 기업들의 규제를 풀고, 개발을 통해 자연을 훼손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방조하고, 감당 못 할 폐기물(핵연료, 온실가스,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배출을 묵인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PCC 1.5°C 특별보고서는 2030년까지 45%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을 이루지 않으면 1.5°C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산업화 이후 지구 전체의 온도가 1.1°C 가량 상승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금도 폭우, 가뭄, 폭염, 한파 등 직접적 기후위기 요인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부수적인 영향들, 즉 홍수, 사막화, 온열질환 증가, 냉해 증가, 슈퍼태풍 증가와 같은 직접 영향과 전염병 창궐, 빈곤 확대, 식량난, 전쟁, 내전으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1.5°C는 살만한 세상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근래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 1 실무그룹 보고서는 1.5°C 특별보고서의 예측보다 더 앞당겨서 위험이 찾아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정부와 각 정당은 이해와 대책은커녕 이해관계와 득실만을 따지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는 2030 NDC 역시 40%라는 초라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의 과제를 미래로 미뤄놓는 안일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탈핵을 약속한 바 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핵발전소 폐쇄,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핵 없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5년 남짓의 시간 동안 정부는 핵발전소를 줄이긴커녕 오히려 늘려놓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핵발전만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을 줄여나갔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번 정부 임기 내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줄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했다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수반되지 않았다.

생태 문제에 있어 건강한 먹거리의 문제는 중요하다. 유전자변형생물(GMO) 원료기반 표시제는 시민사회의 숙원이었으나 그간 수입업체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청원을 통해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으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을 책임지는 농민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자원 순환은 다른 국가에 비해 구체적으로 분류된 체계는 보유하고 있고, 재활용 수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있으나 수거된 폐기물의 재활용의 측면을 넘어 이제는 재사용이 힘든 일회용품의 생산을 멈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생산자의 책임은 자원순환법 상에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노력’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폐지는 수거되어도 국내에선 재생용지 수요가 적어 국내에서 폐지의 재생을 담당하는 기업이 없고, 해외로 수출되어 가공되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공약에 비해 현재의 수준은 4대강 가운데 몇 곳의 보를 상시로 개방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가짜뉴스에 편승하여 지역주민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금강의 경우 보 상시개방의 효과로 수변 모래톱이 회복되고, 녹조 역시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를 해체하거나 재자연화 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의 연장선에서 내성천에 건설된 영주댐은 사업성이 없고, 내성천의 생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해체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새만금은 얼마 남지 않은 갯벌들의 보전이 문제로 떠올랐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만큼 악화되어버린 수질로 인해 해수유통이 시급한 사안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지역에 한정된 이슈로 파급력이 크지 않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가리왕산은 평창 동계올림픽 약 10일간을 위해 원시림을 파괴하였고, 복원을 약속한 강원도가 복원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해마다 여름만 되면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멀쩡하던 나무들도 말라 죽어가고 있다.

생태·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여러 병폐를 해결해야 한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말 뒤에 숨어 탐욕을 채우는 이들을 규제하고 견제할 방법들이 필요하다. 생태 문제의 개혁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자연을 자본이나 권력이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아울러 시급한 기후위기 현안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형성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절실하다. 아울러 인간 중심을 넘어선 생태민주주의, 즉 공존과 공생을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1. 기후정의법 제정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전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 필요
 - UN을 통해 각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감축계획 요구 되고 있음
 - COP 26에서 발표된 각 국가의 목표치를 합산해도 1.5°C 목표달성이 힘들
 - 한국의 경우 2030년 감축목표치 40%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 감축목표치 40%의 경우도 감축경로 등에서 불명확함
- 정의로운 기후위기 문제 해결 필요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그간 탄소배출로 부를 축적해온 기업들의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감축목표치에서 그리고 ‘녹색성장’이 법안에 반영됨을 통해 오히려 책임을 벗어나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가장 심각한 피해에 직면하게 될 당사자들(농민, 청소년 등)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이 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세부 정책 내용

- 2030 NDC 50% 이상으로 상향 및 감축 방안 및 경로 명확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의 현실화 필요
 - 경로와 방향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 기술공학적 해결방식 상용화 전까지 목표 수치에 반영중지
- 기후위기 시대 정의에 걸 맞는 법으로의 개정 필요
 - 기업의 그린워싱 내지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아닌 그간 발생한 기후위기의 책임을 위해 그간 기후위기에 기여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삭개오세’가 필요
 - 삭개오세를 통해 징수한 세금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비용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용
 - 삭개오세 : 세리 삭개오가 회심 후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 절반의 재산을 쓰고, 속여 빼앗은 것은 네배로 갚겠다고 한 것처럼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친 이들이 기후위기에 기여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세금제도로 반영하자는 제안
 - 사회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을 구제할 세부적인 방안을 법령에 반영
 - 산업부문 감축목표치 상향 및 기업별 감축 방안 및 실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기대 및 파급 효과

- 기후위기 대응의 남은 10년 가량의 시간을 위한 구체적 목표가 수립되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고, 기업과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됨
-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일어날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존과 공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2.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 향후 발전소 건설 및 관련 시설 설비 건설에 영향을 주는 기본 계획에 있어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여 계획을 수립함
- 신규원전 추진 중단, 노후원전 조기폐쇄와 더불어 조속한 탈핵이 필요
 - 탈원전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탈원전 로드맵이 부재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80년이 한참 지난 다음 달성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미래 세대에게 핵발전과 핵쓰레기의 위험과 처리를 떠넘기는 상황
 - 소형모듈원전(SMR) 등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를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건설중임
 - 삼척 블루파워를 비롯한 건설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맹방해변 침식 등) 및 다양한 문제가 발생 중임에도 민간 발전사가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를 중단시키거나 백지화할 수 있는 법령과 방안이 미비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진흥책 및 구체적 로드맵 마련 필요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개인, 지역, 기업, 국가적 계획이 없고, 장기적 계획도 부족
 - FIT(발전차액지원제도)나 설치비용의 지원 등이 미약하고, 개인의 참여에 대해 제한적이라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못함

■ 세부 정책 내용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및 현실화
 - 에너지 수요감축 및 효율화 방안을 고려하여 기본 계획 다시 수립
-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 신규원전 추진 중단, 노후원전 조기폐쇄, 설계수명 미만의 원전 조기폐쇄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탈핵기본법 마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감축분 반영하여 조기폐쇄)
 - 탈석탄을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 가능토록 법령 제정, 단 매몰비용의 보상 등을 법령을 통해 명시
 - 재생에너지 100%로 발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연도별 목표치 수립 및 유인책 마련
 - 재생에너지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환경저감대책 법안에 반영

■ 기대 및 파급 효과

- 탈핵,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핵사고와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통해 에너지원료 수입국의 지위를 벗어나고 안보의 측면에서 위험을 낮춤

3.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및 관리계획 전면 재검토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등)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장이 없음
 - 사용후 핵연료로 대표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반감기를 고려하여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기를 고려)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고, 월성 핵발전소의 경우 포화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밀식저장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역시 존재함
 - 박근혜 정권 시절 진행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공론화는 파행운영으로 인해 결론에 대해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재검토가 진행되었으나 이 역시 파행운영으로 인한 구설에 휘말리고 반대여론이 극심했음
 -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낸 결론과 문재인 정권에서 낸 공론화의 결론이 다르지 않았음
 - 안전한 최종처분장 부지에 대해서는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을 핵발전소 소재지역인 지방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공론화를 통해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50년 기한의 건식저장시설을 핵발전소 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경주에는 맥스터, 캐니스터라는 이름의 건식저장시설 이미 존재)
 - 공정성을 이유로 탈핵시민단체들을 공론화 설계단계에서 제외했고, 산업부가 공론화 전반을 진행함에 따라 공정한 관리가 되지 않음

■ 세부 정책 내용

- 핵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구성
 - 안전관리 및 폐기에 대한 원칙 등을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구성
 - 최종처분장 및 처리 방식에 대해 규정하되 현세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식을 원칙에 둬
 - 감시기구 혹은 위원 중 윤리적 책임을 다루는 전문위원을 두어 위원회의 결정이 핵산업계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함
- 국민적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및 설명
 -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여 그간 핵발전소 소재지역으로서 고통받아온 지역에 다시 고통을 전가하는 해결방식은 지양하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
 - 국민의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고 전 국민에게 알림을 통해 핵폐기물 문제를 일부의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는 방안을 수립

■ 기대 및 파급 효과

-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함
-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

4. 신공항 계획 철회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지역별로 10개의 공항이 적자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0개의 신공항을 계획중인 상황
 - 여타의 교통수단으로 인해 국내선 항공편 운항은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항확충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토목건설을 기획중임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상황
 - 프랑스의 경우 국내에서 일정시간 이하의 거리는 항공편 운항을 전면 금지시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항공기 운항이 기후위기에 큰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에 심각한 주범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공항 건설은 난개발임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역행하는 상황임

■ 세부 정책 내용

- 신공항 계획 전면 철회
 - 기후위기와 적자운영의 두 가지 문제를 가진 신공항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전환
- 기후정의에 기반 한 국토교통 정책 수립
 - 기후정의에 기반 하여 탄소배출이 적은 교통수단을 우선으로 교통정책을 구성하고, 탄소배출이 많은 교통수단의 경우 최소화 및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

■ 기대 및 파급 효과

- 토목건설 시 생태계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 및 만성적자 공항의 유지를 위한 비용 절감
-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대책으로 작동

5. 토지 강제수용법 폐지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개발을 위해 농지 및 생활터전을 강제로 수용당하는 농민 및 지역민들 존재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와 임야 등을 강제로 수용당하고 내쫓기는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이 뒷받침하는 상황
 - 개발독재시절 만들어진 악법이 여전히 기업과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

■ 세부 정책 내용

- 토지 강제수용법 폐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발의 경우라 할지라도 적절한 보상을 통해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사업자 등의 사익을 위해 토지나 임야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기대 및 파급 효과

- 골프장이나 산업단지, 신도시 등을 위한 대규모 난개발을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하거나 불합리한 방식으로 강탈한 토지 위에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음

6. 그린벨트 재설정 및 DMZ와 국립공원, 생태자연도 1,2 등급부지 개발금지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
 -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숲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고,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나 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 DMZ, 국립공원(설악산, 지리산 등), 생태자연도 1,2등급 부지 등이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음
 - DMZ의 생태보전구역들이 지자체에 의해 관광구역으로 개발되거나 북한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심각한 훼손을 당함
 - 국립공원 역시 케이블카, 산악열차 및 부대관광 시설 계획들이 지자체에 의해 수립되어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
 - 생태자연도 1,2등급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양수발전소 예정지가 되거나 골프장 건설의 대상지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일부러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개발을 위해 임의로 생태자연도를 변경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남

■ 세부 정책 내용

- 그린벨트 재설정
 - 도시 생태계 보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그린벨트 소유주 등에게는 보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합당한 보상책 마련
- 생태적 보전 가치가 있는 공간에 대한 개발금지 공식화
 -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공간에 대한 개발금지를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마련
 -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공간의 유지를 통해 생태교육의 장으로 삼음
 - 지자체가 개발이 아닌 관리와 유지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금 등의 방안 마련
- DMZ 고속도로 건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리산 하동 알프스 사업, 양수발전소 건설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토건 사업 전면 중단

■ 기대 및 파급 효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 유지
- 숲이 폭염 시 수분 방출을 통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순환을 통한 인류 생존의 다양한 부수적 이익들이 창출(임산물 및 유기물, 미생물, 지하수, 강 등)

7. GMO(유전자변형생물) 원료기반 표시제 시행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GMO 원료기반 표시제가 청와대 청원 20만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후 논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음
 - GMO 원료기반 표시제는 GMO가 사용된 모든 식품에 유전자변형생물을 사용하였다는 표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상으로 GMO가 사용되었으나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콩기름(식용유) 등은 표기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을 변경하여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류에 해당 사항을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현행 성분표시제)
 - 청와대 청원 20만이 넘었고, 대통령의 지시로 사회적 협의체는 구성되었으나 GMO 수입판매업체 등이 금전적 손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GMO의 안전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 중에 있으며, 장기간 섭취할 경우의 인체영향등은 검증된 바가 없고, 개발 과정의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문제와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초제 남용과 종자개발기업들의 횡포 등도 제기되고 있다.

■ 세부 정책 내용

- GMO 원료기반 표시제 시행
 - 수입 원료가 GMO인 경우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령 변경

■ 기대 및 파급 효과

-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GMO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GMO 대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이 늘어나 생태적인 농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

8. 농민기본소득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농민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기후위기 시대에는 특히나 더 중요한 존재로 부각될 것이지만 농민들의 삶은 그 중요성만큼 대우받고 있지 못함
 -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산업발전을 위하여 저임금 노동자 수급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농업과 농민, 농촌을 소외시켜왔으며, 이로 인한 여파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임
 - 대다수의 농민은 생산노동 대비 적은 대가를 받고 있고, 이는 젊은 세대가 농촌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 전문성을 가진 이들의 존재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농업정책은 스마트농업 같이 기존 농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시설 설비 비용만으로도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방식이었고, 이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음
 - 농민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지자체별로 기본소득을 채택하고 운영하는 곳이 있으나 전국으로 확대가 필요하고 농민들이 농업을 지키는 대가로서 삶을 영위 할 만큼의 금액으로 지원이 필요함

■ 세부 정책 내용

- 농민기본소득 실시
 - 친환경 농업,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농어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책정하고 지급하여 농촌과 농민의 삶의 여건을 향상시킴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년 및 실직자들에게 귀농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 인구절벽, 소멸로 가는 지방지역들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9. 탄소발자국 표시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우리의 먹거리는 각기 생산에서 배송까지 탄소발자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거리와 운송 수단, 냉장 수송, 해산물의 경우 활어차 수송 여부 등을 통해 결정됨
 - 현대 사회의 특성상 도시에 수많은 이들이 살고 있고, 이들의 먹거리는 농촌과 해외에서 생산됨에 따라 운송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신선한 먹거리의 수요로 인해 냉장 수송, 활어차 수송 등을 통한 먹거리 운송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이 일상화됨
 -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우 수출입을 통해 수많은 식품을 공급하는 상황이며,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1.0%, 식량 자급률(사료용 제외)은 45.8% 수준이며 1990년에 비해 20%가량 하락한 수준이라 지속적으로 해외 수입은 증가 추세임
- 축산물의 경우 해외에서 길러졌거나 해외 수입 곡류를 사료로 사용함에 따라 곡류의 생산과 운송에 드는 탄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
 - 축산업은 탄소배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며, 특히나 공장식 축산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함

■ 세부 정책 내용

- 탄소발자국 표시제
 - 생산과정 및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추산하여 제품에 표기토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탄소배출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도록 함

■ 기대 및 파급 효과

- 기후위기에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실천모델이 됨
- 윤리적 소비의 모델로서 공감대를 얻게 되면 생산 및 운송에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동력이 됨

10. 채식급식 선택제도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정의와 윤리적 측면에서 채식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
 - 기후위기와 공장식 축산의 비윤리성, 동물권 등의 다양한 이유로 채식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 역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중임
- 급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찬과 식사가 일괄 배식되는 형태로서 채식을 선택한 이들은 급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함
 - 아동, 청소년 채식주의자의 경우 급식에서 선택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먹지 않을 음식을 강요당하는 것과 다름 없음

■ 세부 정책 내용

- 채식급식 선택제도
 - 강제성이 있는 급식에 있어 채식 선택권 통해 개인의 선택을 사회가 함께 존중하고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
 - 버려지는 식재료를 줄임으로서 음식물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을 줄여나감

■ 기대 및 파급 효과

-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채식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자유를 확대하는 경험을 학교에서부터 일상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누림
-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채식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기회

11. 자원순환기본법의 사업자 책임 강화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일회용품의 남용으로 인해 일회용 폐기물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태평양에 거대한 쓰레기섬(GPGP,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이 떠다니고 있는데, 이는 특유의 안정성으로 인해 썩는데 수백 년 걸리는 플라스틱이 바다 위에서 해류를 타고 한곳에 모여 벌어진 상황이며, 이 플라스틱은 파도로 인해 작은 알갱이로 쪼개져 작은 물고기 등이 먹이로 착각하고 섭취하는 상황을 유발하기도 함
 - 미세플라스틱이 바닷물을 통해 소금이나 어패류를 타고 식탁을 위협하는 상황도 발생
- 육상에서 대기에 노출될 경우 플라스틱 일회용기는 삭으면서 탄소를 배출함
 - 화석연료의 가공을 통해 생산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태울 경우 독성 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존재하고, 매립이나 방치의 경우에도 대기 중에서 삭으면서 상당한 양의 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함
- 생산업체의 가격경쟁력과 편의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강요당하는 상황
 -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일회용 쓰레기에 대한 여러가지 생산자 책임을 규정해놓았으나 추상적이고, ‘노력’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체재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이 거의 시도되지 않는 상황

■ 세부 정책 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상 생산자 책임 강화
 - 일회용 쓰레기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여 수거 및 재사용을 활성화 할 방법을 모색함
 - 일회용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일회용기 제작 업체에 부과하는 벌금이나 처벌 등의 강한 제재 필요
 - 제작업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할 제도적 장치 마련

■ 기대 및 파급 효과

-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해결책 마련
- 일회용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감소 및 일회용 쓰레기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감

12.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종이 생산을 위해 매년 심각한 정도로 숲이 사라지고 있음
 - 1인당 사용하는 종이의 양을 나무로 환산하면 237그루 가량, 인구수로 환산하면 심각한 숲이 훼손당하고 있음
 - 실제로 펄프를 생산하기 위해 원시림이 베어지고, 원시림이 있던 자리에는 종이 펄프 제작용 나무들이 심어지는 상황임
- 재생지는 수요가 적어 생산업체가 적고, 가격경쟁력에서도 뒤쳐짐
 - 국내의 재생지 수요가 많지 않으므로 생산업체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발생된 상당수의 종이 폐기물들은 해외로 옮겨져서 가공되고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 세부 정책 내용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재생지 사용 의무화
 - 수요증진 정책의 일부로서 종이 소비에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우 재생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정
- 언론사, 출판사 등의 간행물 발간에 재생지 사용 의무화

■ 기대 및 파급 효과

- 폐지 수거 및 활용 원활화
- 폐기물 감소를 통한 비용 감소

13. 4대강 재자연화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문재인 정권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보 상시개방 수준에 멈춤
 - 녹조 발생 및 여러 문제로 인해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행을 준비했으나 가짜뉴스에 편승한 지역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실행이 지연되고 지선, 총선의 선거철마다 뒷걸음질 침
 - 상승한 지하수위로 인해 관정 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및 수변개발 등의 이권 사업이 얽혀 난관을 만들어 냄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어민들은 어업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피해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
-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하나도 열지 못한 상황
 -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 일부 혹은 전체 보를 개방하여 변화를 확인하고 환경의 영향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도했고, 확인 결과 금강의 경우 모래톱이 돌아오고 1급수에서 사는 어종들이 돌아오는 등 '회복'으로 볼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남에 따라 상시개방이 결정되고 일부는 보 해체의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어감
 - 한강과 낙동강의 경우 심각한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오염도 심각하게 일어나지만 부분개방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녹조는 남조류의 일종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될 시 작물에 축적되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식수로의 사용은 불가능함

■ 세부 정책 내용

- 4대강 보 전면 상시개방 및 해체계획 수립 및 실행
 -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이 될 보 전면 상시개방을 통해 생태계 회복을 꾀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해체작업 시작을 위한 계획 수립,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민 피해 등 구체책 마련

■ 기대 및 파급 효과

- 수많은 시민들의 식수원인 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음

14. 새만금 갯벌 해수 상시유통 및 보전대책 마련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새만금 갯벌 해수 상시유통 필요

- 새만금 갯벌은 수많은 생명의 삶의 터전이고, 철새들이 머무는 공간이었으나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인해 간척사업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매립 및 공단조성 등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땅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에 가까운 상황임
- 해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물이 흐르지 못해 부영양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농업 용수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 얼마 남지 않은 갯벌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수라갯벌의 경우 신공항 부지로 예정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고, 다른 갯벌들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을 계획 중인 상황
- 갯벌 보전이 세계적 추세이며, 근래는 심지어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되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거슬러 갯벌 간척과 활용에만 몰두하는 상황임

■ 세부 정책 내용

○ 새만금 갯벌 보전대책 마련

-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오염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및 갯벌보전 대책 마련 필요

■ 기대 및 파급 효과

- 갯벌이 가진 생태적 효능들을 회복하고 오염의 문제를 해결
-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멸종위기종인 철새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갯벌을 보전함과 동시에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경제 활성화

15. 가리왕산 복원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평창 동계올림픽 약 10일 남짓의 경기를 위해 스키장 건설
 - 가리왕산의 원시림을 베어내고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를 위해 조성된 경기장이고, 조성 전부터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공간에 스키장을 조성하는 문제로 말이 많았던 사업
 - 강원도가 복원을 약속하고 시작했으나 복원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고, 복원 준비도 이뤄지지 않았고, 복원의 의지도 없는 상황
 - 복원 계획 대신 곤돌라를 남겨두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산의 훼손이 심각한 상황
 - 매년 여름철이면 비로 인해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턱에 방지턱을 만들어 놓았으나 큰 비에는 무용지물인 상황
 - 산의 나무들이 베어진 중간 부분을 따라 외곽지역의 나무들부터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중임

■ 세부 정책 내용

- 가리왕산 복원
 - 곤돌라 철거 및 본래의 수종들을 통해 숲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계획 수립 및 실행

■ 기대 및 파급 효과

- 가리왕산의 생태계 회복
- 산사태 및 나무 고사 방지를 통해 비용 감소

16. 영주댐 철거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녹조 발생, 생태계 훼손, 부실공사 의혹으로 얼룩진 상황
 - 내성천 수질 개선, 홍수피해 경감, 영주·안동·예천·상주 4개 시·군의 생활·공업·농업 용수 공급, 하천 유지, 수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건립된 다목적댐
 - 부실공사 의혹과 남조류(녹조)발생으로 인해 댐을 상시 개방하려 하였으나 지자체의 반대로 인해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고, 매년 심각한 녹조 발생, 1급수 어종인 흰수마자가 사라짐
- 무용지물로 전락한 댐
 -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담수 수위가 낮아 지역에 저수지 형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녹조로 인해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상황임에도 사업성이 없는 댐을 유지하느라 지속적으로 비용 지출 및 내성천 생태계 훼손이 발생 중

■ 세부 정책 내용

- 영주댐 철거
 - 댐 철거 및 내성천 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및 실행
 - 내성천을 비롯한 생태적으로 중요한 하천의 경우 보전구역으로 지정을 통한 개발금지 등의 특별 법안 마련

■ 기대 및 파급 효과

- 내성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회복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 이주 난민 분야 -

분야	이주 난민
목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2. 난민위원회 상설 기구화 3. 난민의 가족결합권 보장 4.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보장 5. 외국인 구금 사법적 심사 적용 6. 이주 구금의 장기화 금지 7. 이주아동 구금금지 8.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에 대한 이의 가능 및 구제 9.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체류 정책 개선 10.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대책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단체 및 담당자명	기독교법률가회(CLF), 김세진 변호사
전화번호	010-2886-6112
이메일	clfkorea@gmail.com

■ 이주 난민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현재 한국정부의 외국인 인력 정책은 현대판 노예제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 외국인 인력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 ‘고용허가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철저히 사용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유롭게 노동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임의로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폭행을 하거나 임금체불 같은 부당한 처우를 하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은 하였으나, 그 피해 사실 및 사유를 이주노동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사적관계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사실상 강제노동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떠밀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등록체류자가 됩니다.

이렇게 미등록체류자가 되어 단속된 이주민들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구금의 필요성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보호명령이 발부됩니다. 보호명령이 발부된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데 한국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구금에는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중범죄자에게나 집행되는 4년, 5년을 구금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구금은 성인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미등록체류자이면 그 아동들까지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난민 하면 시리아 난민들이 떠오를 정도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시리아 난민들은 인도적체류지 위치에 불과합니다. 그들에 대한 처우는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고,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권리가 전부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적 분쟁 상황과 한국의 인구변동과 외국 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난민과 이주민의 유입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은 이주민을 생산수단의 한 요소로만 보고, 그들의 한국 사회 통합에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차별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이동은 단순히 ‘생산 수단’의 이동이 아니고 ‘사람’의 이동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 사람의 삶과 가족과 사회적 인간관계 전반이 사회와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인력관리나 출입국 관리 정책 차원에 머물러 있는 현 이주민 정책은 근본적 재고가 필요합니다. 이주민과 난민들의 인권과 처우를 고려하는 이주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난민법시행 이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의 경우 약 0.4%에 불과한데, 엄격한 이민정책으로 유명한 미국마저도 난민인정률은 약40%.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이 30%인 것에 비하여 한참 낮고, OECD에서는 일본과 함께 최하위 수준.
- 중장기계획 없이 막연히 매년 난민신청자가 증가한다는 판단 속 행정부의 부담, 이로 인한 출입국관리 관점의 역설적 강화로 제도가 경색적으로 운용됨. 단순한 낮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보호되는 난민사례군도 실제로는 협소한 난민인정기준으로 국내에서는 미보호되는 문제.
- 난민정책은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할하여 외국인을 통제하는 관점의 출입국관리의 하위정책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난민보호라는 선명한 정책을 집행할 단위가 ‘한국에 난민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한국정부의 역할은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미 들어온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추방을 시도해야 한다’라는 형태의 출입국관리 위주의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음
- 난민협약상 난민임에도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및 아래와 같은 문제들의 복합으로 인해 난민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난민심사관수의 독립성의 미보장, 부족한 교육, 국가정황정보에 관한 조직부재, 통역지원체계의 부재에서 공정성의 흠결의 문제, 협소한 난민인정기준이 발생하여 난민들이 보호에서 탈락함, ①증가하는 심사건수에 비해 난민심사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심사건수가 적체되고, 심사기간이 1-2년에 달하게 지연되어, 난민들의 불안정한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제도의 건강성도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인프라에 관하여는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아 타부처에서 예산, 구조적 지원이 전혀 되지 않음.

■ 세부 정책 내용

- 난민정책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밀한 연구 및 평가가 요구됨. 현재 보다 난민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정교하게 다루는 포괄적이고 독립된 난민정책계획의 수립.
- 난민인정심사, 난민처우에 관한 주무부서의 적절성 검토, 1차 단계 각 지역 출입국사무소의 난민심사관과 통역인 충원 및 외부강사에 의한 난민심사관 교육

■ 기대 및 파급 효과

-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및 인프라 확보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장

2. 난민위원회 상설 기구화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난민신청이 불인정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난민위원회가 심사를 함.
- 그런데 현행 난민위원회는 비상설 자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된 기관도 결정기관도 아니며, 위원 또한 상임직위가 아닌 비상임직위기 때문에 상시적인 이의신청 심의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정황정보의 조사를 담당할 조사인력 및 이의신청자의 면접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무부 난민과에서 심사를 위한 조사 및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제한은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위한 구두진술권의 보장과 객관적인 국가정황자료 수집을 어렵게 하여,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인 이의 신청 심사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음.
- 현행 난민법상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심판에 갈음할만한 구체적 규정이 법률상 미비하며,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과 관련 난민위원회의 권한이나 심의절차, 난민조사관의 권한 및 사실조사 절차 규정에 대한 상세 규정이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함.

■ 세부 정책 내용

- 독립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난민위원회의 상설화 개편 및 국가정황정보(COD) 전담 기관의 설립

■ 기대 및 파급 효과

- 난민위원회의 독립된 심사를 통해 정책적 관점에 의해 좌우되는 1차심사의 오류시정 및 전문가들의 신중한 심사역량 축적

3. 난민의 가족결합권 보장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난민의 가족결합은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 전권대사 회의 최종문서'에서 권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 준수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에는 난민의 가족의 결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단지 난민법에 난민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입국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민가족결합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매우 유동적.
- 난민제도 운영 초기에 정부는 원래 가족들이 함께 난민신청을 하고 가족으로 인정되면 난민의 가족에게도 F-2-4비자를 부여하였으나, 2017년 지침 개정 이후부터는 난민가족이 난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F1 방문동거비자를 부여하더니, 최근에는 심지어 난민신청을 함께 한 경우더라도, 가족만의 박해 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난민인정을 하지 않고, F1비자를 주는 경우까지 발생.
- 난민가족결합권은 난민 가족이 반드시 난민이 아니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다. 가족결합권은 가족 또한 난민사유에 따른 박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를 보호하고, 난민이 체류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당연히 가족이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결합 차원에서 난민 가족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임. 따라서 난민인정자의 가족에 대하여 난민가족이 별도로 난민 박해 사유가 없더라도 가족이면 당연히 가족결합 원칙에 따라 보호 받아야 함.

■ 세부 정책 내용

- 가족결합이 인정되는 난민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실질적 부양가족으로 확대. 미동반 미성년자의 직계존속도 가족결합의 범위에 포함.
- 난민 가족에게 동반비자인 f1 비자가 아닌, 난민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새로운 난민가족비자 신설하여 난민비자와 선택 가능하게 할 것.

■ 기대 및 파급 효과

- 가족 재결합은 가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방법임. 가족결합권의 보장을 통해서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문화적 안정성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4.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보장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난민법은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인도적체류자”로 용어 정의를 내리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적합한 용어는 해외 입법례 및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충적보호”임. 국제기준에서의 “보충적 보호”는 “고문방지 협약 및 자유권 규약 등에 의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난민의 5가지 박해사유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충적으로 추가 포섭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즉, 여기서 ‘보충’의 의미는 보호 대상의 범위 확대 보강의 의미로, 보호의 필요가 보충적이라는 의미는 아님. 그러므로 고문방지 협약 및 자유권 규약 등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보충적 보호지위”와 시혜적 의미에서 임시적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인도적 체류지위”는 구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인도적 체류지위는 보충적 지위로 용어를 변경하고,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하는 “보충적 보호지위”와 시혜적 의미에서 임시적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인도적 체류지위”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그 국제적 기준 및 제도 운영에 더 적합한 입법임.
- 그러나 당장 이러한 법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처우에 대해서 만이라도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하도록 개정이 시급함. 난민법은 인도적체류지위자에게 강제송환되지 않을 권리와 취업할 권리만 규정해 놓고 있음. 인도적체류지위자에게 G-1-6 비자를 부여하여 단순 임시체류와 구분이 잘 되지 않고, 국적법상 영주자격을 획득할 수 없고, 가족결합도 불가함. 인도적체류지위자에게도 난민과 동일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난민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함.

■ 세부 정책 내용

- 난민법 제39조를 개정하여, 난민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인도적 체류지위자에게도 준용.
- 난민법 개정 전이라도 시급히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체류자격 타입을 임시비자인 G-1이 아닌 장기 거주 가능한 비자로 변경할 것. 장기적으로는 인도적체류지위자를 보충적 보호지위자로 변경하는 난민법 개정이 필요함.

■ 기대 및 파급 효과

-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이 국제법상 인권 준수 의무를 다하게 됨.
- 인도적 체류지위자들의 처우가 개선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인도적체류지위자들의 사회통합의 진전이 있을 것임.

5. 외국인 구금 사법적 심사 적용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인신구속은 (ㄱ) 조사(심사결정)를 위한 “보호”와 (ㄴ)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로 나뉘는바, 모두 전적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따르며 사법부의 심사를 전제로 하지 않음. 출입국관리법상 인신구속사유 근거규정의 포괄성, 인신보호법 적용의 배제,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 일선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긴급보호의 보편화로 출입국당국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인신구속은 대내외적인 사전통제 및 사후통제가 작동할만한 기제가 존재하지 않음.
-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워킹그룹은 2010. 1. 18.자 보고서³⁾에서 “행정구금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종수단이 되어야 한다. 엄격한 법적 제한이 준수되어야 하며 사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법으로 구금기간 상한이 규정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시 피구금자는 자동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구금은 판사에 의해 명령되거나 승인되어야 하며 각각의 개별 사건에 대해 자동으로 개시되는, 정기적인, (행정적 심사뿐만 아니라)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2. 2. 15.자로 발표하여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서 “‘보호’는 실제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계를 마련하여 출입국관리분야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을 핵심추진과제(VI-6-2)로 권고하였음.

■ 세부 정책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모든 유형의 인신구속에 대해 사법적 심사 보장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할 것.

■ 기대 및 파급 효과

- 외국인들에 대한 기계적인 구금을 제한하고, 구금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해 부당한 장기 구금 예방

3)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 Human Rights Council, UN문서 A/HRC/13/30, 2010, 17-18면

6. 이주 구금의 장기화 금지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 보호소에 6개월 이상 장기구금된 외국인이 상당수 존재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장기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하고 있음. 위험성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구금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치 않은 구금을 남발하여 외국인 구금 관리 비용 낭비.
- 장기 구금자 대부분은 난민신청자임. 난민신청자의 경우 국제법상 강제송환이 금지됨. 그런데 위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송환집행을 위한 구금이므로,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본법의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함. 그럼에도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라고 해서 구금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체류 중에 난민신청 남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난민신청자도 구금할 수밖에 없습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는 난민신청 남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선의의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결과를 낳음.
-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구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구금은 적절한 최소 기간 동안만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음.
-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년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함.

■ 세부 정책 내용

- 외국인의 구금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 하여 외국인 구금의 상한을 규정할 것
- 정부 입법안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안 발의

■ 기대 및 파급 효과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 근절.
- 필요하지 않은 구금에 소요되고 있는 국가 재정 낭비 방지.

7. 이주아동 구금금지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아동의 구금은 그 기간의 장단과 무관하며, 구금 사실 그 자체로 불안증세나 불면증, 심한 경우에는 PTSD나 자살충동, 정신이상에 이르기도 함.
-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이주아동 구금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난민 아동, 난민신청아동 그리고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이 국가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쉽게 구금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이 부당한 시설에 수용되고 구금의 상한이 없이 퇴거명령이 집행될 때까지 구금이 되고, 구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사법심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난민, 난민신청아동,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 자유박탈에 대한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위 권고 이후에도 국내의 이주아동은 여전히 구금되어 왔음. 2013.1.부터 2015.6.까지 전국 외국인 보호소(실)에 구금되었거나 현재 구금중인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조사한 결과 총 98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미취학 연령인 8세 미만의 아동은 26명으로 전체의 약 26.5%를 차지하였음. 그 26명 가운데에는 3살 남아가 30일 동안, 2살 여아가 81일 동안 구금된 경우도 있었음
- 구금이 아동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이주아동 구금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

■ 세부 정책 내용

- 이에 출입국관리법상으로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구금하는 경우에 보장되어야 하는 이주아동의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조문의 개정 및 보충이 필요함.

■ 기대 및 파급 효과

- 이주아동이 구금되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기대되는 효과임.
- 이로써 이주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게 됨.

8.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에 대한 이의 가능 및 구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서 사업주가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변동신고의무를 부과함).
- 그런데, 이러한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즉, 소위 사업장이탈신고) 관련, 동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 상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즉, “사용자의 허락없이(무단으로)” 결근했는지에 대한 판단절차가 동법상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출입국관리법 상 사업주에게 고용변동신고의무만 부과할 뿐 그 이후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고용노동부는 업무편람을 별도로 마련하여 동 업무편람 상으로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가 있는 후 1개월 내에 이의제기 가능토록하고 있으나, 이의제기하여도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가 취소 내지 철회되지 못하고, 체류자격이 취소되어 강제퇴거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갑자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조치(보호조치)되는 것이 현실인바, 동 조항의 신설이 매우 절실함.
- 실제 출입국관리법의 미비를 악용하여,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휴가를 준 후(또는 휴가에 대한 허락을 한 뒤) 외국인근로자의 휴가기간 동안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이유’를 들어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런 경우, 휴가에서 돌아온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체류자격이 취소되어 강제퇴거조치가 되거나 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공항 송환대기실에 억류된 채 입국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그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 세부 정책 내용

-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에 대한 이의 절차 및 구제 조항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부입법안으로 개정 발의.

■ 기대 및 파급 효과

-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무기 삼아 인권침해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됨.

9.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체류 정책 개선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의 노동인구 감소 및 산업 구조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을 통제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 이동 및 직업선택 통제를 통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 또한 이주노동자의 장기거주 또는 정착을 금지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은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강제퇴거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를 강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 외국인인 합법적 비정규직 또는 미등록(불법) 외국인 비정규직으로 내국인 노동자들과 위계적으로 분할된 이중 또는 다중 노동시장 구조를 강화하고, 그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세부 정책 내용

- 많은 행정력과 비용을 들여 해외에서 저숙련 노동자를 단기간 도입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역시 많은 행정력과 비용을 들여 강제추방하는 현 재의 단기순환 노동이주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지속가능한 정주 형 노동이주 체제를 정책적 대안으로 마련해야 함.
- 모든 이주노동자와 동반가족이 인종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기대 및 파급 효과

-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는 노동권 및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 노동 전반의 노동조건과 노동권 개선 효과.

10.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대책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약 2만명 정도로 이르고 그 수가 늘고 있다고 추산되는 ‘미등록(undocumented)’인 부모에 의해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해외에서 출생후 아동으로 입국한 경우들을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르는데, 부모가 미등록 체류에 이른 다양한 경위는 차치하더라도 아이들의 경우 출생과 존재 자체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선진국들과 달리 아무런 제도가 없어 사실상 한국 사람으로 십 수년 살아왔다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불안정하게 추방 위험 속에 자라며 한국 사회의 성원이 되지 못함 (문제 1 - 체류자격 부여를 통한 사회 정착 지원 필요성)
- 한편, 외국인의 경우 중 난민,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는 다양한 이유로 자국 대사관에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데, 국내 법령은 출생신고와 국적취득, 체류자격 부여가 연계된 것이 아님에도 제도의 미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한국의 법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건강권, 교육권 등 모든 것이 침해 됨. 영국·독일·미국 등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제3자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의 법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국가 관할권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 운영하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제도 마련을 권고해왔음(문제 2 - 보편적 (universal) 출생등록 제도 신설 필요성)

■ 세부 정책 내용

- 법무부가 21'에 발표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제한적 요건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 공교육을 국내에서 이수하고 한국사회에서 성장, 소속감을 느끼며 일원으로 정체성을 형성한 이주아동들(Innocent, One of Us)에게는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첫째 해외 출생 포함, 15년보다 단기화 검토, 대책 시행기간 한정 폐지 등 신청조건의 확대, 둘째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최소화 및 분할납부 허용 등 합리화
- 부모의 인종, 국적, 체류자격, 출신지역 등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등 개정, 의료기관의 출생통보는 의료보험 가입 여부 및 국적과 무관하게 병원 출생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도록 보장,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제한,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보장

■ 기대 및 파급 효과

-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체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아동들이 인종, 국적, 체류자격,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법적 인격’을 얻고(보편적 출생등록제도), 공교육을 국내에서 이수하고 한국사회에서 성장, 소속감을 느끼며 일원으로 정체성을 형성한 이주아동들(Innocent, One of Us)에게 그에 맞는 성원으로 살아갈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 장애인 분야 -

분야	장애인
목차	1.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2.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3. 개인예산 도입 4. 장애등록제도 폐지 및 개인별 욕구기반 서비스 도입 5. 소득보장체계 개편 6. 장애인 경제활동 차별철폐 7. 장애인 주거권 확보 8.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보호 9.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10. 장애인을 고려한 4차산업 기술혁명 11.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국가 책임제 12. 장애인 맞춤형 평생 교육제도
단체 또는 담당자명	기독법률가회(CLF) (박종운, 김예원)
전화번호	010-2886-6112
이메일	clfkorea@gmail.com

■ 장애인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상당 부분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장애인은 모든 부문에서 비장애인과 상당한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2022년 대선을 맞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과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하는 공약, 정책 분야별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특정 욕구보다 ‘장애계 공동이익’을 우선하는 공약을 정당 및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정당 및 후보와 무관하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공약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2022년 대선공약 기독교시민단체연대는 ‘2022 대선장애인연대’ 등 2022년 대선을 맞이하여 장애당사자와 장애인 단체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여 정당 및 대통령 후보들한테 요구하는 공약(정책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 및 보강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12대 공약을 제시한다.

1.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생긴 회의기구로, 2007년 현재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 되어 30인 이내의 위원(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운영
-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연 1~2회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통합적인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장애인종합정책의 수립,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 정책이행의 감독·평가 등 3가지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하였으나 상시적 조정 및 감독·평가 기능 부재
- 장애인정책은 복지 외 교육·고용·문화·교통·접근성 등 다양한 정책영역과 연관성이 높아 보건복지부가 조정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며, 현행과 같은 국무총리 산하 운영보다 소수이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상설 운영 필요
 - 장애인이 가진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평가하여 거시적·통합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정책 전달체계에 반영시켜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1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
-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장애인의 권리는 국제장애인인권선언과 대한민국장애인인권선언을 기초로 보호되어야 하나 장애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 시혜차원의 선별적인 복지정책으로 일관되어 온 장애인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보편적인 정책의 수립-결정-시행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증진에 기반하여 정책을 점검하고 최종 평가하는 관제탑 필요함

■ 세부 정책 내용

-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상임 위원 위촉
 - 민간과 정부 공동위원장 선임, 20인 이내 위원 구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 임명 의무화
- 장애인복지정책 책임제 도입
 - 정책입안-실행-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을 총괄하여 모든 부처(서)의 정책, 시책, 사업 속에 장애인에게 의도하지 않는 불평등이나 차별사항이 없는지 감시
- 장애당사자 개방형 채용 직위 신설
 -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장애당사자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내 임용

■ 기대 및 파급 효과

- 부처별 장애인정책의 통합·조정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
- 장애인정책에 대한 책임성 및 전문성 있는 집행으로 장애인 권리 증진

2.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정책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감도
 - 예산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도구 중 하나이며, 예산의 배분구조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우선순위를 보여줌. 따라서 장애-비장애인 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예산을 통해 반영됨
 - 장애인복지정책은 지난 십여 년간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 또는 삶의 질 향상은 높지 않음
 -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주류예산(main-streaming budgeting)이 장애-비장애인 불평등 문제와 무관해 보이지만 의도하지 않게 기존의 장애차별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주류 예산 사업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장애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예산배분 구조를 통해 확인할 필요 있음
- 성인지예산 제도의 긍정적 성과처럼 장애인의 평등 및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필요
 - 국제적으로도 성인지 예산(gender-sensitive budgeting) 제도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 평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등장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자되었음
 -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도입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장애 분리 통계 생성 필요
 -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 ‘인천전략’에 따르면 “장애인은 잘 보이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아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고 하고 있음
 - 양질의 장애통계가 구축되어야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결정이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수립될 수 있음
 - 각종 통계 산출시 장애인 여부를 기본적으로 질문하면 일반 국민과 비교 및 비장애인과 격차 감소를 위한 비교통계를 산출할 수 있음

■ 세부 정책 내용

- 장애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의무화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 개정
- 장애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중앙 및 지역 장애주류화센터 신설 : 각종 법령, 계획 및 사업 등의 장애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장애영향평가팀’과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에 대한 장애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전담하는 ‘장애인지예산팀’으로 구성된 장애주류화센터를 중앙 및 지방에 신설 및 운영
- 장애 분리 통계 생성을 위한 통계법 개정 :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성되는 통계자료를 구축할 때 ‘장애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코드화시키도록 통계법 개정

■ 기대 및 파급 효과

- 장애인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비의도적 차별 방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감소 및 장애주류화 실현

3. 개인예산 도입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개인별 맞춤, 이용자 중심으로 장애인정책 주요개념 변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개인별 맞춤,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참여를 장애인정책과 서비스의 주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복지는 의존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Beveridge(1942)가 말한 기본 원칙이며, 사회복지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방식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음
- 이용자 선택권 강화 수단 ‘개인예산제도’
 - 최근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서비스에 대한 선택, 서비스에 대한 통제, 사람중심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자기주도(self-direc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자기주도 개념의 정책적 구현수단으로 해외에서는 개인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개인예산제도는 서비스에 대한 총량을 정하고 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구매력을 확보하는 제도로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시행중임
 - 사회복지 급여 형태 중 현금은 현물, 바우처에 비해 가장 높은 이용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음
- 장애인의 사회 참여 제약 요인은 ‘이동의 불편함’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함(25.0%)’이 주된 요인이었으며,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도 ‘검진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해서(18.6%)’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지원(20.0%)’을 희망
 - 캐나다는 버스, 지하철, 일반택시, 특별교통수단 등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교통바우처 제도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27.8% 수준
 - 정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의거 저상버스 보급률 42% 목표
 - 8개 특별·광역시 평균 보급률 40.0% 수준. 인천광역시(22.7%)와 울산광역시(12.3%) 등 상당한 편차 존재
 - 9개도 평균 보급률 16.5% 수준. 강원·제주 외 7개도 모두 목표치 달성 못함
- 더딘 저상버스 도입 및 저상버스의 대/폐차 시 계단차별 버스로 회귀
 - 2007년 이래 15년 차를 맞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중 목표 보급률 달성은 계획 첫해에 불과하며 목표에 비해 실제 보급은 상당히 지연됨
 - 기존 저상버스 대폐차 시 계단차별버스로 돌아가는 사례 또한 다수 보고
-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83.4% 수준(현 대수는 3,914대로 법정대수 4,694대 대비 약 800대 부족)
 - 8개 특별·광역시 간 특별교통수단 운행 보급률 상당 격차 존재 (서울: 85.1%, 인천: 57.3%)
 - 9개도 간 특별교통수단 운행 보급률 상당 격차 존재 (경기: 112.8%, 충북 62.1%)
- 지방이양정책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에서의 현격한 지역 간 차별

-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차이
- 매칭을 돕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유무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차별
 - * 대도시는 공단 위주 운영 <-> 지역도시는 민간위탁 방식
- 지자체별 상이한 중구난방 운영방식 및 불합리한 환승 체계
- 비휠체어 장애인용 임차·바우처택시 대수 확보의 어려움
- 입법 상황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 개정)
 - 2021년 3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회 발의됨(천준호의원등 40명 공동발의), 2021년 6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회부
- 입법 상황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 법 개정)
 - 2021년 7월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회 발의됨(심상정의의원등 30명 공동발의)

■ 세부 정책 내용

-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개인예산제도 도입
 -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장애인 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관련 법적근거 마련
-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바우처제도 도입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맞춰 저상버스 도입률 상향 추진
 - 재량 사업 예산이 아닌 의무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법 개정 필요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공공성 강화
 - 중앙정부는 최초 차량 도입비만 일부 보조할 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 이동의 제약과 편차가 심각
 - 지방이양사업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국가보조금사업으로 변경하고, 국가 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이동권 보장
-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지자체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
 - 시·도지사, 환승·연계·접수·배차 등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정부 지원
 - 서비스 질적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정하여 운영사항 통합
 - 지역마다 제각각인 요금, 운행시간, 거리, 운행방식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필요사항을 국토부령으로 규정
- 전달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 위한 운영기관의 공공성 강화
 - 운영기관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특별교통수단 대기수요 해소를 위하여 바우처·임차택시 확대

■ 기대 및 파급 효과

-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체계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방식 전환
- 장애인 이용자에게 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한 부여
- 서비스 선택권 강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4. 장애등록제도 폐지 및 개인별 욕구기반 서비스 도입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기존의 의학적 판정기준을 대신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19년 7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도입
 -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특성 및 욕구,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조사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장애인의 욕구 판정 및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연결 전달체계 필요
 - 장애인복지제도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전달체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신청해야 하며, 개별적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결정됨
 - 공급자 중심적 전달체계를 탈피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판정하여 권리로써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형 전달체제로 개편 요구됨
- 장애등급제가 1단계, 2단계 폐지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할인·감면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음
 - 할인·감면제도는 장애정도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간접소득보장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음
 - 2022년 3단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수요자 중심의 개별화된 욕구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제도 정비를 위해 할인·감면제도 개편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인별 서비스 보장 요구
 -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 시,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을 두었으나, 이러한 장애등급제가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 한다는 비판 제기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결과와 등급제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및 욕구에 따라 개별화 권고(2014)
- 역대 정부 공약사항 및 현 정부 국정과제 채택
 -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인 문재인·박근혜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42-4)을 국정과제로 채택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20~'21년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 계획
 - 20대 국회 당시, 양승조, 오제세, 김승희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서비스법 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 개념 재정립, 장애인의 제권리 명시,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실체법적 요소를 지닌 기본법으로 제정
 - 장애서비스법 제정 :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지원과 운영 관련 사항 규정

- 장애 개념 사회화 및 장애등록제 폐지
 - 장애를 개인 특성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된 결과로 정의
 -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사회 활동 및 참여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서비스 또는 권리옹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장애등록제 폐지, 장애서비스이용자 제도 도입, 지원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용어 사용 제안
- 장애인의 제권리 규정
 - UN장애인권리협약에 의거한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장애 관련 타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통해 기본법(모법)으로서의 성격 명확히 규정
 - 지역위원회를 통한 장애 관련 서비스/급여 결정 이의 신청 제도 마련
-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
 - 장애정책 심의 체계, 장애서비스 복지 전달체계,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및 장애 관련 연구개발 지원 체계 등 4대 주요 체계 신설 또는 강화
 - 국가장애인위원회 :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중앙, 광역 및 기초 수준의 장애인정책위원회 구성 (국가 장애인위원회 → 시도위원회 → 시군구위원회)
 - 국가장애서비스공단 : 국가가 미리 공적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장애서비스공단(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종류와 양을 직접 결정하고 이를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는 전달 체계 구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
 - 국가장애연구원 : 장애 관련 분야 연구개발, 관련 산업 진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장애 관련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활성화
- 재원확보 방안 명시
 - 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을 내국세의 일정비율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장애보험료 신설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매년 심의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는 절차 마련
- 입법 상황
 - 정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 운영(‘21년 3월~6월)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상정(‘21년 8월)
 - 국회 법안 발의 및 입법 검토(‘21년 9월~)

■ 세부 정책 내용

- 장애 특성 및 형평성 고려하여 서비스종합조사표 개선 : 장애유형 및 중복장애 등 조사표 세분화
- 중앙 및 지역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 서비스 욕구조사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구매 계약 → 서비스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할인·감면제도 개편 연구 및 대안 마련

■ 기대 및 파급 효과

- 이용자중심, 사람중심, 개인별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

5. 소득보장체계 개편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전체 인구의 절반 남짓, 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수준(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42.1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423.1만원)의 57.2% 수준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국민(64.0%)에 비해 58.3% 수준이며, 고용률은 34.9%로 전체국민(61.5%)의 56.7% 수준
- 77.1%의 장애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은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 월평균 16.5만원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소요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24.3만원으로 더 많은 비용 부담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60.8만원), 간장애(46.2만원), 뇌병변장애(34.2만원), 신장장애(29.4만원), 지적장애(28.7만원) 순임
- 소득보전 못하는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선 필요
 -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9년 기준 698,716명으로 수급률⁴⁾은 70.7% 수준임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월 최대 8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1/3 수준임
 -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한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 등 장애인의 기본생계 보장을 위해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 필요
- 장애인 대상 국민연금제도 개편 필요
 -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시 60~65세 이후부터 수령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평균 수명이 짧아 노령연금 수령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음
 - * 1급 장애인 평균 사망연령 69세, 전 국민 사망 평균연령 74세. 최혜영의원실(2020)
 - 독일은 65세부터 완전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장애정도가 50% 이상이면서 35년 이상 기여하였을 경우 63세부터 연금 수령. 프랑스는 65세부터 완전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20.8~31.5년 이상 가입한 장애인은 55세부터 연금 수령
 - 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개시연령을 상향할수록 평균 수명이 짧은 장애인 불리
 - 광업·어업 등 특수직종 종사자는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55세로 하고 있고, 국민연금 도입 당시 납입 기본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소 가입기간을 5년으로 하는 특례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한 것처럼 장애인 대상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 장애인 국민연금 가입자 110,003명. 중증 52,021명, 경증 57,982명. 최혜영의원실(2020)

4)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 / 2019년 수급권자 수) * 100

■ 세부 정책 내용

- 장애인 기본소득 금액 연구 및 제도화
 - 생계, 주거, 의료, 교통, 교육비 등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초비용 산정
 - 장애인 기본소득 관련 법 개정
-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
 - 중증장애인 전체 및 수급자인 경증장애인 등까지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25만원까지 인상, 경증장애인 부가급여 도입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도 개편
 - 장애인 조기수령 및 가입기간 변경 등 연구용역 및 제도화

■ 기대 및 파급 효과

- 장애인의 기초 생계 보장을 통한 삶의 격차 완화

6. 장애인 경제활동 차별철폐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해마다 증가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으나, 적용 제외 대상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이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늘고 있음
 - * 최저임금법 제7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장애인을 예외대상으로 인정
 -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노동력이 일반노동자의 70% 이하로 평가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승인하고 있음

연도	2005		2019	2020	2021.8월 말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현황(명)	140	...	8,971	9,005	6,547

- 장애인=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 때문에 장애인인 노동자로 불리기 무색할만큼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능력이 낮은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
- 최저임금 적용제외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363,441원으로 올해 최저임금(1,822,480원)의 20% 불과
-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속 하락

연도	2019	2020	2021.8월 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평균 임금(원)	380,169	371,790	363,441
월 평균 최저임금(원)	1,745,150	1,795,310	1,822,480

국회 윤준병 의원실

- 일반 경쟁고용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 특히 정신적 장애인이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이 되고 있음. 지적장애 80.2%(7,221명), 자폐성장애 7.6%(680명), 정신장애 5.5%(495명) 순
- 장애인노동권 침해 정당화하는 독소조항에 유엔도 우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국가적 차원의 임금보전 정책 시행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권고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우리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 도입을 권고했음
 - 고용노동부는 여러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전제도 미시행

■ 세부 정책 내용

-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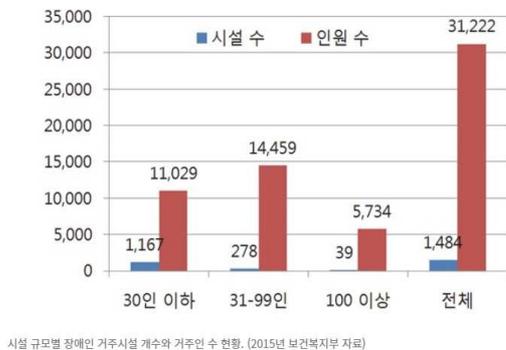
■ 기대 및 파급 효과

- 헌법 제3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인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차별 해소

7. 장애인 주거권 확보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효과적인 탈시설 조치 권고
 - * 위원회는 한국이 정신·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법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 2011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4항 개정
 - *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조항을 둠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1,557곳의 장애인 29,662명
 - * 2017년 국가인권위, 10년 이상 거주(58.1%), 비자발적 입소(67%)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생활욕구 실태



자료: 2016년 경기복지재단

- *국정과제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22년)
 - : 장애인거주시설예산은 지속증가(2021년, 10.1%) 탈시설장애인의 주택 및 정착금 지원 부재
- *2021년 2월 기준. 코로나19 장애인거주시설 25개소, 177명(14.5%) 확진(전체인구 감염수준의 4.1배)
- 탈시설 및 장애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거 대안 마련 필요
 -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2.4만명) 중 8.3%는 퇴소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는 '25년부터 자립 지원 계획'(21.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 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이 49.9%에 해당하며, 장애인 중 27.2% 1인 가구 해당(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고령장애인은 '친숙한 환경에서 나이 들어감(aging in place)'에 대한 욕구가 크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탈시설장애인의 증가 등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욕구가 분출될 것임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와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제공 필요
- 장애인의 주거 욕구 충족을 위한 주택 공급 및 편의시설 지원 필요
 - 장애인가구의 무주택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70.7%로 전국 평균(41.0%)에 비해 1.7배 많음. 장애인가구의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8.0년으로 전국 평균 6.9년에 비해 1.1년 김
 - 장애인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자가 비율이 낮고 월세 비율이 높음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장애인가구	55.8	9.5	24.3	3.8	6.5
전국	58.0	15.1	19.7	3.3	3.9

국토교통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가구의 1순위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24.6%,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16.9%, 월세보조금 지원 16.1%,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16.0% 순이며, 전체가구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이 31.2%로 가장 많았고, 전세자금 대출지원 23.5%,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11.9%로 차이가 있음
- 장애인가구는 주택개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을 42.4%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전체 가구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 51.4%가 주택개조를 하지 않은 것과 차이를 보임
- 주택개조를 원하는 장애인은 16.6%이나, 주택개조사업 이용 경험 장애인은 장애인의 0.3% 불과(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관련 법안 제·개정 발의상황
 - 2021. 2.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
 - * 집단거주시설 감염병 발생 시 분산조치, 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긴급탈시설)등 의무화
 - 2021. 4. 20. 장애인복지법 11명,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발의
 - *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제공, 장애인 주택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
 - 2020. 12. 10.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 발의(최혜영의원등 68명 공동발의), 국회 보건복지상임 위 소관위심사 계류 중,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세부 정책 내용

-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및 주거정책 5개년 계획 수립
- 다양한 유형의 주거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제도화
 - 탈시설장애인, 재가중증장애인, 고령장애인, 독거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모델 확충
 - 주거유형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 부여
-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
 - 장애인 우선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
 - 장애인 대상 전용 금융상품 개발(전·월세 대출) 등 주거비 지원제도 마련
-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 개조지원 확대(농어촌장애인 외 편의시설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등)
 - 장애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삶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기본권 명시
 - 보편적인 지역사회 탈시설-자립생활 기본서비스 보장
 - 시설폐지(신규시설 설치금지) 및 신규입소 금지
 - 주거서비스의 시설화 요인 제거 및 권익옹호단체 연계 상시화

2012 유럽 탈시설화 공동 기준

탈시설은 집단적 처우나 '시설적 문화'로 인해 모든 사람의 꿈, 자존감, 자유와 권리를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도록 하는 '시설사회'를 철폐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 인권모텔에 입각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및 지역사회지원서비스 확대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
- * 위원회는 탈시설화 전략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우려함
- *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인권모텔에 입각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함
- 장애인거주시설 및 전달체계 중심의 시설서비스 재편 금지

UN CRPD 일반논평 5 :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관련한 장애물들

- 탈시설 전략과 계획의 부재,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 19조를 적절히 시행하는지 확인 감독할 수 있는 장애인 대표 조직의 부족
-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기회의 지역적 불평등을 야기한 부적절한 분권화

- 범죄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장애인탈시설지원 의무화
 - 기본 법 체계에서 인권침해시설은 시설폐쇄명령과 법인 설립허가취소 등이 가능하나, 시설문화 및 장애인 삶의 변화에는 한계가 분명함
-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지역사회 사회보장체계를 연결하여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 자립생활환경 조성
 - 탈시설 후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보장
 - 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을 국가, 지자체가 함께 보장
 - 시설수용시대를 종결하고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의 정의 규정
 -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안 제2조)
- 탈시설 장애인 지원 강화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제공 등 (안 제25조, 제26조)
-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
 -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 (안 제32조)
-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3조~제50조)

■ 기대 및 파급 효과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촉진
-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강화
-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

8.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보호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 ‘인천전략’ 10개 목표 중 하나는 ‘장애포괄적 재난위험 감소 및 권리의 보장’으로 장애인의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는 전세계적 과제임
 -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대책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상위 통제 및 상황관리 측면에서 상시교육훈련, 재난대응 인력 및 장비 등에서 미흡한 실정임
- 재난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닥칠 수 있지만 대응역량은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10만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보다 2.5배 더 많음⁵⁾
 - 시각장애인은 ‘불이야’라는 소리나 화재경보음을 통해 화재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스스로 비상구를 찾아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통해 화재상황을 감지하지 못해 대피시기를 놓치거나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움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은 눈과 소리로 화재상황을 감지하고 비상구를 파악할 수 있으나 스스로 몸을 움직여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발달장애인은 비상상황시 대피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당황하고 흥분하여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상황별 행동요령과 대처방법 사전 공유 필요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대응교육 및 대피훈련 필요
 - 정부는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상황을 체험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473개소의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체험관은 전무
 - 장애인거주시설은 연 2회 의무적으로 소방교육 및 대피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외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은 지침이 부재하며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의 교육 및 훈련 기회가 전무함
 -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과 전달방식이 달라야 하나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시행 부재

■ 세부 정책 내용

-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부서 신설
 - 장애인재난 정책 수립 및 컨트롤타워 지정
 - 장애인 재난·안전 관련 통계자료 수집
- 장애인재난대응 전문 훈련센터 건립
 - 장애유형별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 연령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재난대응인력 대상 장애포괄적 훈련 실시(공무원, 공공보건인력, 의료종사자, 소방대원, 구조대원, 경찰, 군인 등)

5) 2019년 국가화재통계. 이종성의원실(2020) 재인용

- 장애인재난대피시설 지정 및 편의시설 설치
 - 비상대피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물품 비치(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유도·안내설비, 전동보장구 충전기, 의사소통 보완도구 등)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재난대피시설에 대한 정보 안내(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등)
- 재난취약계층 대피 기구 개발 및 보급
 - 장애유형별 재난 알림을 할 수 있는 기기나 소프트웨어 제작. 재난 시 대피를 보조해줄 장애유형별 보조기구 및 장비 개발
 - 재난대피기구 보급사업 시행

■ 기대 및 파급 효과

-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자력 대피 능력 향상
- 재난약자로서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

9.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피해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개인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는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공익적 성격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개별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해야 함. 차별 및 권리침해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력 없이 시정권고만 가능하고, 소송은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만 이뤄질 뿐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음
 -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복 진정·소송 등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소송 제도 도입 필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가시화로 개인진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 비준되었으나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은 유예됨
 - 선택의정서가 비준되면 권리침해를 경험한 장애인이 국내 구제절차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한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가 발효됨
 - 개인진정제도의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국내 제도 및 법률 개정 필요(개인진정 지원제도 마련, 선택의정서 교육 및 홍보 강화, 국내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개선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 필요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장애인차별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이용, 사법절차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범부처 과제에 해당
 - 장애인차별이 발생하면 개인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 후 권고할 수 있음. 인권위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때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장애인차별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의 예방 및 인식개선의 중대한 역할의 수행 필요성이 있으나 전달체계상 장애인 권리침해에 강력한 대응주체는 법무부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소관부처 변경 검토 필요

■ 세부 정책 내용

- 단체소송 도입 및 관련 법 개정
- 개인진정 지원체계 마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진정제도 이행을 위한 관련 법 제정
 - 개인진정 결정 이행 모니터링 집행기구 신설
-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 이관(보건복지부→법무부)

■ 기대 및 파급 효과

- 장애인 권리구제 방안 개선을 통한 장애인 권익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10. 장애인을 고려한 4차산업 기술혁명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격동하는 경제·사회구조와 노동시장 재편의 상황에서 장애인은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
 - 특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 정부는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추진
 - * '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하여 신시장 창출 및 민간수요 견인
 - * 한국판 뉴딜의 비전
 - 1) D·N·A(Data Network 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 2)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 3)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듯한 나라’
 - 신기술혁명의 시대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전략의 추진이 장애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나, 이에 낙오된다면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
 -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 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화
 - *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50년까지 130조달러 투자 필요 전망
- 비대면 서비스 확산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장애인 접근성
 - 키오스크, 무인매장, 스마트폰 앱 주문, 온라인 쇼핑, OTT 및 원격강의 등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발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대부분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미흡
 - 키오스크 규격, 웹과 앱 접근성은 공공분야에만 적용되며, 방송 및 동영상의 장애인 접근성은 일부에만 적용되는 등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 및 정보 접근을 가로막고 있음
-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81.3 수준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80.3%로 일반 국민(91.9%)에 비해 11.6% 낮음. 스마트폰 보유율은 장애인 76.6%, 일반국민 93.1%로 16.5% 차이
 -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정보화 접근(95.4), 정보화 역량(74.2), 정보화 활용(81.4) 측면에서 모두 일반 국민보다 낮은 상황임

- 대비 없이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에게 재앙
 -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는 단순히 정보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정보의 소유, 활용 능력에 따라 부자와 빈자가 구분될 수 있음.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낮은 소득, 낮은 학력, 높은 연령 등은 전통적으로 지적돼 온 정보격차 요인으로, 구사회위험에서부터 시작된 기본적인 격차의 상쇄없이 4차 산업혁명의 빠른 기술발전을 맞이하게 되면 장애인의 정보격차 및 디지털 역량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임
-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의 도구
 -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을 위한 AI 기반 수어통역 서비스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미지를 인식하여 시각장애인의 시각적 인식을 돕는 앱, 발달장애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AI 채팅 서비스 등이 국내·외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 발전이 장애인에게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및 연구개발 필요

■ 세부 정책 내용

- 장애인을 포괄하는 한국판 뉴딜전략 추진
 - 5G, AI, 로봇을 포함하는 D.N.A 생태계에서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숲, 생태계 복원시 장애인의 접근성 포괄
 - 공공교통의 전기차, 수소차 확충시(20.3조원) 장애인 접근성 고려
 -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AI, SW 핵심인재 10만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총 4.4조 투자)시 장애인 특화 사업 추진
 - 4차산업혁명시대에 장애인의 적합직종 개발 및 장애인 역량강화
- 메타버스, VR, AR, 로봇 등 장애인 접근성 고려한 콘텐츠 개발
- 과학기술 개발 및 각종 서비스 도입 시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접근성 고려하도록 각종 규정 개정
- 공공분야 장애인 접근성 의무화 및 모니터링 강화
 - 장애인 접근성 민간분야 권고 확대
- 장애인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실시
 - 장애유형 및 특성(1인가구, 고령장애인 등)에 따른 디지털 역량 교육 실시(키오스크 이용,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금융거래 이용 등)
 -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음성비서 등 디지털 정보화기기 보급

■ 기대 및 파급 효과

-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향상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삶 실현

11.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국가 책임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현황

1) 매년 증가하는 발달장애인 수(보건복지부, 2020)

- 2019년 말 기준 발달장애인 수는 약 24만 2,000명으로 등록장애인 중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7.0% → 2015년 8.5% → 2019년 9.2%

2) 발달장애인 80%, 타인의 지원 필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발달장애인 중 80%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41%는 일상생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연령별, 일상생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비율을 살펴보면,
 - 만18세 미만 발달장애인: 59.4%
 - 만18세 이상 ~ 만64세 이하 발달장애인: 34.1%
 - 만65세이상 발달장애인: 68.2%

3) 절대적으로 부족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 부족한 발달장애인 1:1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총(급여)량

- 돌봄서비스는 만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총급여량이 1년에 720시간밖에 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만 이용할 수 있음
- 활동지원서비스*는 만6세 이상 ~ 만64세 이하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나, 발달장애인 월평균 총급여량은 120시간 정도로 하루 4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함

*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종합조사표를 도입하여 장애인이 처한 환경과 필요를 고려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급여량을 판정한다고 하지만 종합조사표가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발달장애인 중 24시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최대급여량인 16시간을 제공받는 발달장애인은 단 한명도 없음.

○ 부족한 집단적(2인 이상) 낮시간 지원서비스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 방과후활동), 평생교육기관 등은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2인 이상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임.
- 성인기 발달장애인 17만 2000명 중 50%가 집단적 서비스(거주시설 포함)를 이용하고 있으며, 24%가 취업 등 경제 활동(직업재활시설 이용 포함)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26%인 4만 5,000명은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어떤 지원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보건복지부, 2018)
- 하지만 이 역시 추정치이며, 정부는 단 한 번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생활실태 및 필요 전수 조사를 시행한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몇 명의 발달장애인이 지원 서비스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함.

4) 여전히 높은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가족 지원 의존도

- 발달장애인 1:1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총(급여)량 및 집단적 낮시간 지원서비스 절대적 부족으로 부모나 가족이 발달장애인의 주 지원자가 될 수밖에 없음.
 - 발달장애인 중 부모나 가족에게 10시간 이상 지원을 받는 비율은 평일 40.6%, 주말 71.6%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특히, 저녁 및 야간 시간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외 별도 지원체계가 전무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가족이 지원할 수밖에 없음
- 정부가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에 그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나 가족에 의한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으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 방과후활동)가 도입되었지만 그 대상 인원과 제공시간이 부족하여 여전히 부모나 가족에 의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5)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미비

-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 상 65% 이상이 의사소통 시 지원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시 일정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현재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통한 언어치료서비스 이외 전무한 상태임
 - 반면에 의사결정 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선호도를 최대한 고려해 대신 의사결정을 하는 공공후견 인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발달장애인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며 특정 영역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6) 발달장애인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부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서비스를 연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현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제공기관을 연계할 권한이 거의 없음. 또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그나마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는 전자바우처 간 변동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결국, 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는 ‘정부주도’ 지원체계라기 보다는 ‘가족주도’ 지원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부모나 가족의 지원없이 발달장애인은 결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7) 여전히 열악한 발달장애인 고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 2019년 발달장애인 고용률: 27.0% / 전체장애인 34.9(지체장애인 44.3%, 시각장애인 41.9%)
- 발달장애인 직장 유형별 취업자 비율
 - 일반사업체 고용률: 48.1% / 전체장애인 79.6%(지체장애인 82.8%, 시각장애인 81.9%)
 -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고용률: 32.3% / 전체장애인 2.9%(지체장애인 0.6%, 시각장애인 0.6%)
- 발달장애인 고용률이 비발달장애인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비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일반사업체에 취업한 반면, 발달장애인은 51.1%가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복지일자리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한 발달장애인조차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

■ 세부 정책 내용

1)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재구축
- 전수조사 시 발달장애인 자립육구조사를 실시하여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연차별 대상인원 선정 등)

2) 지원주택 도입

- 지원주택 은 주택 제공과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복합된 형태로 현재 서울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지원주택: 지역사회 내 물리적 공간(주택) + 주거(생활)유지서비스 지원

- 지원주택을 기본으로 발달장애인 욕구에 기반하여 1인 주거형(개별형주거), 2인~3인 주거형(공동주거형, 단 1인 1실) 등 주거모형을 개발, 단 그룹홈은 지원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 하기 전에 자립생활을 경험하는 ‘체험홈’등으로 전환함. 단기보호시설은 그 원래 취지를 강화하고 기능 보강을 함.

3)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편 및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발달장애인의 환경과 필요를 반영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편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유지서비스 도입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유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유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대인/동행 이동지원 서비스 도입

- 발달장애인 대인/동행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발달장애인 대인/동행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금전관리 포함) 지원서비스 도입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바우처 도입 및 지원의사결정제도(금전관리 포함) 지원체계 구축

지원의사결정제도는 기존 공공후견인제도 활용 및 개편, 금전관리 등은 기존 신탁서비스 활용 및 개편

- 지역사회 기반 행동지원 서비스 도입

- 지역사회 기반 행동지원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현재 병원 기반 행동지원 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 행동지원 서비스 연계 등 지원체계 구축

- 의료적 지원 및 행동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활동)지원제도 도입

- 전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1안) 전문(활동)지원제도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중 의료적 지원 및 행동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경우, 기존 가산급여 1,500원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음

2안) 전문(활동)지원제도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 별개로 의료적 지원 및 행동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관련 전문 인력을 통해 필요 서비스 지원. 단, 의료적 혹은 행동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경우에 따라서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 전문 서비스를 동시에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전문서비스 자격을 갖추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 따라서 이 서

비스를 이용 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음(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내 방문간호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한 활동지원 급여, 그리고 1회당 단가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4) 발달장애인 낮 시간 이용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주간활동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개편 및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를 중심으로 낮 시간 이용 서비스 체계 개편
 - 장애인복지관→ 가활센터 및 기초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환
 - 직업재활서비스→ 성인기전환서비스
 - 평생교육서비스→ 낮 시간 서비스가 아닌 평생교육서비스 혹은 노년기전환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기능 보장 등을 통한 최중증중복 발달장애인 거점형 주간활동서비스
 -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 한 지역사회공간 등을 이용하는 본래 취지 강화
-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보장 및 차감되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보존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일률적으로 차감하는 활동지원 급여를 개인의 필요도에 맞게 조정
 - 주말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5) 지역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지원체계 구축 및 권리옹호 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화 및 확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변동 전산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역할 및 권한 강화
 - 기초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장애인복지관 활용)
- 권리옹호기관 강화 및 확대
 - 제공기관 중심, 시설 중심에서 발달장애인 중심, 지역사회 중심 전환에 따른 권리옹호 기능 강화

[하루 시간별 지원서비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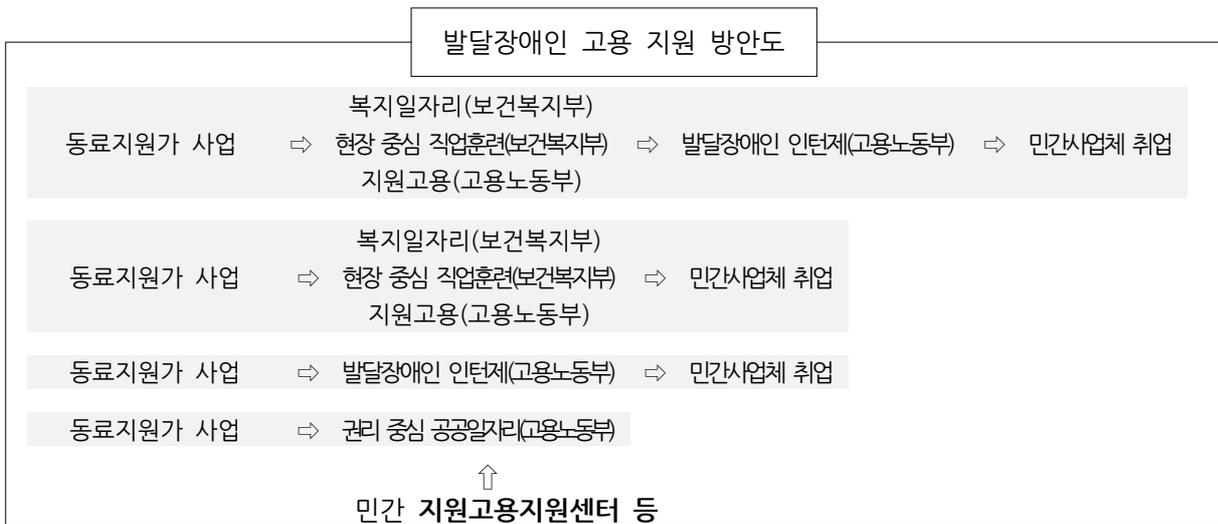
지원서비스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	6시	
주거(생활)유지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전문활동지원서비스)																					
대인/동행 이동지원서비스							필	요	시												
낮 시간 서비스																					
노동(고용)																					
의사소통지원							필	요	시												
의사결정지원 (금전관리 포함)							필	요	시												
행동지원							필	요	시												
개인별지원계획	3개월 단위 계획 평가 및 재수립/각 지원 서비스 모니터링																				
권리옹호	수시 권리옹호																				

※ 도표에 나열된 서비스 중 주거(생활)유지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대인/이동지원서비스, 낮 시간 서비스, 노동(고용), 의사소통지원, 의사결정지원, 행동지원은 절대적인 시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개인별 환경과 필요에 따라 각 서비스 제공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조정할 수 있음. 그리고 발달장애인마다 다르지만 어떤 발달장애인은 위 서비스들의 지원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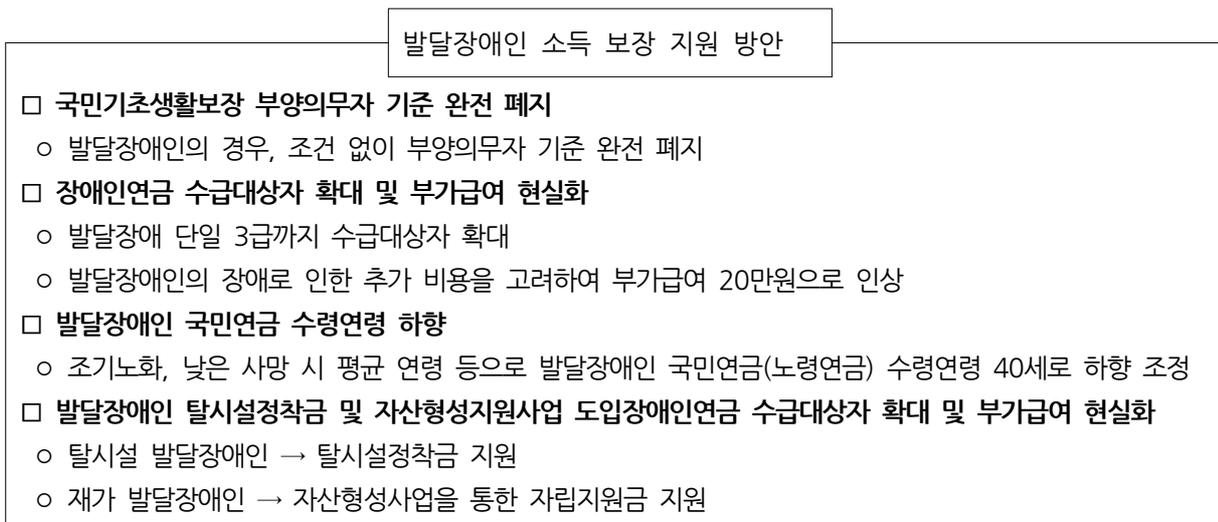
- 6)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지원
 - 개인별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 만6세미만 장애아동에 한해 제공시간 확대
 - 발달장애아동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발달재활서비스 등)

7)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 현장중심의 훈련 및 인턴을 통한 고용 확대
- 민관협력 지원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 확대
- 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를 통한 고용 확대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확대 및 제도화



8)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



■ 기대 및 파급 효과

-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 실질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 정착

12. 장애인 맞춤형 평생 교육제도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의 기초학력이 미달

-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은 총 2,495,189명(장애인의 93.5%)
- 전국 장애인 250만여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 학력(54.4%)이라는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함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 ~ 1.6% 수준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매우 참가가 저조함.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19년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4,295개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 (특수교육연차 보고서 및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80개로 전체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12,330개의 0.3%에 불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 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 되어 있음
-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기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저조한 대학진학률

- 특수교육대상자의 2020년 대학 진학률은 16.6%(2020년 특수교육교육통계)로 전체 대학진학률 72.5%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형편
- 2019년 기준 장애대학생은 9,653명으로 전체 대학생 수에 2,633,787명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함

○ 열악한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복지현황

-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 결과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 중 무려 114개, 27%의 캠퍼스에서 개선요망 등급으로 나타남.
- 장애학생이 9인 이하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담당직원으로 같음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전담직원이 배치되지 않거나 맞춤형 지원 부족함

○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성 강화

-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권 보장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
-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의 고용·복지와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 독자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체계와 2016년 개정 이후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이원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전달체계의 혼선이 발생
-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국가수준의 장애학생 고등지원 컨트롤타워 신설
 -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에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 필요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 강화
 -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운영되면서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가 필요함

■ 세부 정책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
 -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9조)
-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확립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두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보조지원인력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안 제28조 및 제29조)
- 장애학생지원센터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갈음할 수 있는 장애학생 “전담직원”을 삭제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안 제30조)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
 -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제29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 장애인 평생 교육법 제정
 - 입법 상황 : 2021년 4월 20일(장애인의 날) 발의됨(유기홍의원등 48명 공동발의),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심사 예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 입법 상황 : 2021년 4월 28일 발의됨(김철민의원등 42명 공동발의),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심사 예정

■ 기대 및 파급 효과

-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교육권 확보로 시민 양성에 기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 청년 분야 -

분야	청년
목차	1. 재무 건전도 개선을 위한 금융복지 2.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진로 교육 3.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대출 제도 개선 4. 청년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 5. 청년노동 119 - 노동권의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6. 문화 자원 불균형 해소 및 문화 창출 지원 7. 세대 갈등 및 참여 불균형 해소 8.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 건설 9. 정신 및 신체 건강 지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10. 미래세대의 생활공간으로써의 평화로운 한반도 구축 11. 미래세대의 생존공간으로써의 지속가능한 지구 보전
단체 또는 담당자명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년운동본부 (김현아 사무국장)
전화번호	02-794-6200
이메일	cemk@hanmail.net

■ 청년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현대 사회 이행기 청년의 현실

청년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를 보내는 집단으로, 정규 교육 이후 노동시장 등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며 자신의 생애를 구성해가고 과업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동시에 요구 받는 이들이다. 과거 산업사회 시대에는 표준화 된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들이 교육, 노동, 독립, 결혼, 출산이라는 사건과 경험을 집중된 시기에 일방적-순차적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다양성과 불확실성, 변동성과 복잡성이 공존하는 탈산업사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앞서 열거한 성인 이행 과정이 길어지거나 지연되고, 심지어 분절되거나 생략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심화되는 양극화, 무한경쟁과 다층적 갈등의 골레에서 강요된 생애주기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청년들이 각자도생, N포 세대라는 고통스러운 이름표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던 우리 사회 현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문제는 곧 사회문제

따라서 청년문제는 곧 사회문제이다. 교육의 실패가 청년의 자아와 목소리를 지웠고, 채용 시장의 좁은 문과 노동 환경의 위협이 청년의 꿈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학자금 대출과 최저임금 수준, 저성장의 늪에서 건강한 소비와 문화생활은 위축되고 내 집 마련이나 결혼 등 독립을 향한 걸음은 제지당했다. 거기에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혼란과 차단이 2년여 지속되며 청년들은 삶에서 영위해야 할 기회와 경험들을 상실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보장받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노년을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식으로 번지며 불안과 무기력, 우울과 자살충동이 라는 심각한 정서적 위기를 맞게 했다.

〈청년기본법〉의 공적 의지를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도입 및 신뢰 자본 구축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인프라, 문화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확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지를 공표하고 있다.

- ①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 ②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 ③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 ④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등을 위해 계획 수립

이 법의 시행이 진정 의미 있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주하고 서 있는 현실의 벽을 허물고 안전한 연결망과 기회의 장을 보장하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을 바탕으로, 청년의 자아정체감과 일상을 회복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적시적소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의 다면적, 다층적 특성을 이해한 접근 필요

단, 이 때 청년을 단일한 형태로 규정하거나, 획일화 된 생애주기 절차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앞서 기술했듯 다변화되고 모호한 사회 현실만큼이나 청년과 청년의 삶도 하나의 규격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생애주기와 생애과정의 변화를 수용하고 탈표준화 된 연령규범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과 해석이 필수적이다. 청년은 연령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권한과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과 다른 세대, 청년세대 내에서도 출발선과 자원의 불평등 현상과 갈등이 심화된 지 오래이다. 이처럼 청년층의 내/외부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과 우리 사회의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단회적 지원을 포함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찾는 대통령 후보

최근 몇 년간 청년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높아지며 청년 담론과 청년 현상에 대한 언어가 넘쳐났다. 그러나 그 관심과 언어 안에 청년의 실재와 청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담겨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20대 대선 국면에서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청년을 화두로 삼으며 인재 영입과 정책 발표를 이어가지만, 여전히 청년들을 대상화하고 병풍 삼고 시대착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몰이해와 무례함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청년 담론과 청년 정책을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다루지 않고 청년 자체를 국가와 미래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대통령 후보, 청년들이 목소리 내고 손들고 있는 영역을 포착해 귀 기울이고 찾아가며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합의와 대책을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이끌어내는 대통령 후보를 우리는 찾고 있다.

더 나은 정책, 더 나은 청년

앞으로 출범 될 정부는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확장하여 청년들이 피, 땀, 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그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청년의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공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를 힘입은 청년은 점차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꿈과 가치를 잃지 않고 도전하고 성장하며 자신의 내일과 노년을 향한 희망적인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부여된 권리와 책임을 통해 보다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드는 데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핵심가치 : 안전, 자립, 도전, 참여 권리의 확대, 공적 지원 및 신뢰 자본 구축

*키워드 : 자아정체감 형성 | 존중과 평등, 안전 | 주체적 미래설계 | 기회의 보장 | 경제적 자립
| 몸과 마음의 건강 | 안정적 주거 | 문화적 다양성 |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

1. 재무건전도 개선을 위한 금융복지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금융 문제, 안녕의 부재
 - 복지(welfare)는 wel + fare의 합성어로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을 뜻한다. 청년 세대의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려면, 사회 진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다.
- 재무 건전도 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상
 - 청년층(2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16.8%로, 60세 이상(13.4%) 다음으로 가장 낮았으나 2017년(24.2%)을 기점으로 전 연령대를 제치고 지속해서 상승, 2020년에는 32.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자산은 8천864만원에서 1억720만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채 비율은 높고 자산은 적은 청년층의 재무 건전도를 개선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세부 정책 내용

- 사회 진출 시 필요한 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 : 반값 등록금, 사회 주택의 확산, 진로 탐색을 위한 재교육비 지원
- 고금리 전환 대출 및 청년층을 위한 채무 조정 제도 필요 :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및 상환 유예 제도 운영, 심사를 통한 대출 상각 및 사회 진출에 영향이 가지 않는 채무 조정 제도 운영
- 채무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의무 시행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 및 정착을 통한 사회 불안 요소 및 경제 양극화 해소
- 금융 및 교육/상담 지원을 통한 금융 위기 해소 및 건전한 경제 문화 정착

2.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진로 교육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한국사회 청년에게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음.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는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빼앗아감. (청년들은 청소년기 성적순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입시경쟁 이후 취업 시장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해서 선발되어야 하는 취업경쟁에 내내 시달림)
-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청년에게는 사회권으로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탐색할 수 있는 시기로 청년기가 보장되어야 함
 - 국민의 행복권은 생애발달단계별 (연령 및 생애사건별로) 보장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국가사회는 영유아기에는 그에 걸 맞는 발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 노년기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활동 대신 노년기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지원이 이어짐
 - 청년을 위한 권리는 단순히 ‘고용될 수 있는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로 대표되어 왔으나, 평생 학습시대와 고령화 사회에서 청년 시기는 오히려 탐색과 실패의 시기로 주어져야 함

■ 세부 정책 내용

- 진학청년: 국가장학금 제도 전면 개편
 - 현재 고려대학교 등이 도입한 성적장학금 전면 폐지의 기초에 따라, 소득분위와 지불능력에 기반을 둔 국가장학금으로 전면 개편함. 대학 기관평가와 연동하여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함.
- 비진학+ 비취업 청년을 위한 생활안정 청년기본소득
 - 비진학 + 비취업 청년이 제도권 밖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청년기본소득을 계좌제로 운영함. (기본소득 수령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을 이후 국가장학금 상환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국가가 청년기금 운용)
 - 일종의 유예기간(gap year)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NEET쪽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위한 탐색과 상상의 기간으로 보내도록 유도함
- 비진학 + 취업청년을 위한 고용장려금 확대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진학 이후 취업전선에 뛰어난 청년의 경우 대학생 위주로 이루어지는 미래 투자 기회에 대한 차별 우려가 있음
 - 비진학 취업청년들이 생애초기 단계에 진로탐색과 학습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고,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돕고, 내일배움카드제 활용범위 융통성을 높임(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계좌제 시스템 활용)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반영한 사회적 안전망 설계
 - 지금까지 많은 정책이 청년정책 = 고용정책의 공식으로 접근하고 기회를 보장하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짐. 청년들의 취업 여부/ 진학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펼쳐지는 생애단계 과업(도전, 실패, 탐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
- 고용노동정책>청년노동자 정책, 고등교육정책>국가장학금 제도와 연계, 사회보장제도>기본소득제도(안)과 연계

3.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대출 제도 개선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인권을 침해하는 부동산 계급사회

- 우리나라는 국민의 소득격차(5배)보다 자산격차(20배)의 문제가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자산 격차는 가계자산의 89%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빈곤해져, 불평등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소득과 주거비(임대료, 주택매입비용)의 과도한 차이로 소득 계층별 주거생활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소득의 대부분이 주거비에 충당되어 삶의 질이 저하되며 무주택자와 노숙인을 양산하게 된다.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와 같은 현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땅과 주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바, 부동산의 비대칭적 소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기본적 생활기반의 확보를 저해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는 한 사람의 역량 차이나 불성실한 태도 등에서 기인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양산된 문제로서,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이 부담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 무주택자의 가혹한 현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야 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세금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자력이나 신용이 부족하여 거액의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부 월세 내지 무보증금 월세 방식으로 매월 전세금 이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임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무주택자일수록, 소득이 적거나 없을수록, 경제력이 부족할수록, 감당해야 하는 주거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향유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 무주택자의 경우 생활비 내지 가계비 중에서 주거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소득에 비해 윤택한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거 정책을 마련할 때 소득요건으로 인하여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고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요청이 비롯된다.

○ 청년 세대 주거 문제의 특징

- 이상과 같은 주거 문제는 전 세대를 아울러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나, 특히 청년 세대에서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 청년 세대의 경우 인간의 성장발달단계 측면에서는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으로 독립하여야 하는 시기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자립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정규 교육과정인 초·중고 뿐 아니라 대학 진학이 일반적인 진로로 자리 잡게 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직업을 갖고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직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취업 곤란, 창업 기회 및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취직을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 입사시험 및 국가시험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 결국 대학 내지 대학원 진학, 취직 준비 기간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록금, 학원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으로 전가되며, 청년들은 각자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자립할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의 사회적 모습은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는 청소년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우리나라에서 청년 세대의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성인이 된지 오래이지만, 경제력이 없어 사람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자책감,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죄책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서 인생을 대출과 빚더미에서 시작하게 되는 부담감, 각박한 사회구조적 현실에서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삶의 자리와 모습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과 참담함 등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옥죄이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 자녀의 단독 주거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가능하면 부모와 청년 자녀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년 자녀가 대학 진학, 취직 준비, 취직 등의 사유로 분가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육체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특히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이 스스로의 자력으로 주거를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에서 부모가 청년 자녀의 막대한 주거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청년 자녀가 취업을 하는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주거를 마련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년 스스로가 막대한 주거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주거를 매개로 하여 부모 자식 간 가난의 되물림, 주거 불안정의 되물림이 발생한다. 또한, 자신의 신념이나 부모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분가를 원하면서도, 막대한 주거비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마지못해 부모 등(조부모, 친척)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도 있다.
- 또 한편,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주거와 자립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야 하는 척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혹시라도 발생할 갑작스런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위기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에 이들에게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은 필수적이다. 연간 2,000~3,000명에 달하는 국내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거주 시설과 복지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토대를 딛고서야 생계와 교육, 취업이라는 다음 단계의 걸음을 걸어가갈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온전한 성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다하고, 부동산에 관한 사회구조적 불합리와 모순으로 인해 청년들과 그 부모가 과중한 주거비를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의 청년 주거 정책 및 현 상황

- 공공주택 사업 : 청년 행복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 청년 전세금 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
-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하여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있음

■ 세부 정책 내용

○ 무주택 청년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내용

- 주거의 안정과 지속적인 거주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수적임. 주택의 매매 및 임대를 시장경제질서에만 맡기면 주택 매매대금, 전세대금이 계속하여 증가함으로써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장기간 거주할 가능성이 거의 차단됨.

- 기존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

- 1) 대상주택 - 비수도권, 비역세권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거나, 역세권에 마련된 청년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이 노후하여 공실이 많음.
- 2) 입주대상 - 평균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음. 그러나 소득이 많더라도 대출금을 갚는 등의 이유로 실제 생활비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특히 주거비 지출의 부담이 커서 월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들 역시 많음.

- 내용 :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공급을 확충하고 제한을 최소화 하여야 함.

- 1) 대상주택 - 수도권, 역세권 중심 또는 대학 근처에 공공임대주택 마련 필요. 낙후된 환경이나 노후한 주택은 제외하여야 함.
- 2) 입주대상 - 평균소득에 따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평균소득이 많은 직업을 갖거나 취직하기까지 투입한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할 것이므로, 단순히 소득 여하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비교적 소득이 많다고 하여도 그 중 30~40%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하는 것은 불공평함.
- 3) 입주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입주 시 기준으로 19세~39세 청년이면 족하고, 최대 20년간 최고 50세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임. (예시 - 39세에 입주를 시작하는 경우 2년 후에는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방지)
- 4) 임대보증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마련을 위해 후술하는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청년 가구 주거비용 대출제도 개선

- 내용 : 전세자금 대출 제도만으로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퇴거하여야 하므로 장기 거주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매가격은 오르지만 전세기간 만료 후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은 원금뿐이므로 이후 다시 해당 전세보증금만으로는 유사한 임대목적물을 구하기가 어렵고, 전세 임대 목적물의 공급량 자

체가 적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세자금 뿐 아니라 매수자금 대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문화교육교통 등의 여건이 좋은 도심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도심지 외곽 근방에 살아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도심지에서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 1) 대출 목적 - 전세자금, 주택(대지 포함) 매수자금
- 2) 이율 - 연 0.5% 미만
- 3) 원금 상환 : 전세대금 -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음
매수대금 - 상환기간 유예 (5년 내지 10년 후부터 상환)
- 4) 원리금 상환기간 - 10년~40년 기간 안에서 선택
- 5) 대출 한도 -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 권역에 따라 금액이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달리 정함.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규정 참고 필요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10억원 등)
- 6) 대출금 비율 - 전세자금, 매수대금의 90%까지 대출 가능
- 7) 매수대금의 경우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필수 (원리금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비)
- 8)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물량 확대 및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발령(21.10.28.) 시행에 따라 전국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물량과 우선권을 확대

- 어떠한 지지체계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무이자 전세대출 시행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주거의 안정을 누리고, 과도하게 주거비를 지출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을 축적하여 장년 시기를 준비할 수 있음.
-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결혼 및 출산에 투여할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아질 것임.
- 공공임대주택이 확산되면, 주택공급 시장에서도 수요가 줄어들어 따라 공급 가격(매도가격 내지 전세금액)이 조금씩이라도 내려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임.

4. 청년 일 경험 보장제도 신설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로 실업률 상승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불황과 부동산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이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로 이어짐.
- 체계적인 일 경험을 위한 일 경험 보장제도 필요
 - 경력을 쌓기 위해 일경험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하지 않으면 일 경험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대학-기업-기관』이 함께 연계한 양질의 일 경험 보장제도 필요.

■ 세부 정책 내용

- 청년 일 경험 보장제도 신설
 -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청년인턴사업(예.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서울시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등)을 정리 및 통합하여 『대학-기업-기관』이 함께 연계한 체계적인 청년 일 경험 보장제도 신설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일 경험 보장
 - 취업 교육 후 바로 취업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구직자의 취업을 위한 노력만을 요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 교육 후 청년 일 경험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마련 필요.
- 청년 일 경험 제도 기업 지원
 - 청년 일 경험 제도를 원하는 기업을 위한 기업 인건비 지원.
- 청년 일 경험 제도 대학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
 - 대학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교 수업으로 기업에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일 경험 내 근로기준법 교육 필수 이수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 근로기준법 교육이 없어 청년들이 산업현장에서 부당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려워함. 근로기준법 교육으로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함.

■ 기대 및 파급 효과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실질적 취업률을 높이고 부족한 지점을 보완.
- 산발적인 일 경험 제도를 통합하고, 실업률 해소를 위한 『대학-기업-기관』의 상호 연계가능

5. 청년노동 119 - 노동권의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초년생 맞춤형 상담창구의 필요성

- 사회초년생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대처 경험 부족.
- 고용노동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창구가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 사회초년생을 적극 도울 것이란 기대도 크지 않음.
-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비정규직은 노동 관련 문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편. 일자리 불안, 소득 단절의 공포 등의 이유 때문.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청년 직장 내 괴롭힘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서울 거주 만 19~34세 노동자 중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경우 신속히 권리 구제하는 제도.

■ 세부 정책 내용

○ 청년의 노동권의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안전 문제에 관해 119가 일괄 대응하는 것처럼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만들어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자는 취지.
- 청년의 노동권의 보호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기관 또는 부서, 단체 등에 연결하거나 관련 정책을 찾아주는 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전용 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예를 들자면 다산콜처럼 청년 노동권익에 관한 허브 역할을 하는 단계를 만들자는 것.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년 노동권의 문제에 대한 대응 효율화

- 청년들은 큰 고민 없이 문제 상담할 수 있는 접착점이 생김.
- 국가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짐. 단순 상담부터 부당노동행위나 성희롱 문제 신고 연결 등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
- 청년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도 용이해짐. 비실명화를 전제로 상담 유형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청년 노동문제 개선과 제도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 청년 문제 전반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효과

- 제도가 잘 안착될 경우, 일자리·복지·주거 등 다방면의 청년 문제에 대한 일원화 창구 요구도 생길 것으로 예상.
- 정부와 지자체별로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태를 감안, 실제로 청년을 돕는 제도가 되도록 윤활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6. 문화 자원 불균형 해소 및 문화 창출 지원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심리적 박탈감이 큰 영역, 문화 불균형
 -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의 불균형 외에도 문화 예술 및 체육, 여행 등의 문화적 혜택 분야에서 청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문화 공공재의 확산을 통해 문화 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의 삶의 안녕을 추구해야 한다.
- 독자적 문화 형성 지원
 - 고유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경제적, 시간적)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청년층 고유의 문화 형성을 지원한다.

■ 세부 정책 내용

- 접근 용이한 문화 공공재 확산 (공공 체육시설, 공유 공방 및 공유 주방 시설 확대)
- 문화 바우처 확산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지급)
- 문화 형성 지원 사업 (동아리 지원 사업 및 학습 모임 지원)

■ 기대 및 파급 효과

- 문화 불균형 해소 및 문화 산업 소비 증진으로 인한 내수 경제 활성화
- 독자적 문화 형성으로 문화 경쟁력 강화

7. 세대 갈등 및 참여 불균형 해소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세대 간 갈등, 세대 내 갈등의 해소
 - 세대 갈등의 인지와 해소를 위한 노력 요구
 - 빠른 산업화와 경제 상황의 변화 속에서 공유하는 가치관과 생활 양상이 상이한 다양한 층위의 세대가 나타났다. 세대를 구분하는 세대 게임이 정치적 이용이 되는 상황엔 유감이나, 실재하는 세대 갈등을 인지하고 바르게 해소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 세대 불균형(경제적, 사회적)의 현실과 영향을 인지하고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청년 소외 현상 해소
 - 청년의 사회 진출 시기 지연과 소외 현상에 대한 인지 필요
 - 청년 세대(밀레니얼, Z세대 : 1984~2010년 출생)의 인구 분포 자체가 베이비부머(1955~1969년 출생) 및 X세대(1970~1980년 출생)에 비해 적고, 생애 주기의 전반 적 지연으로 인해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 사회 전반 구조 및 정책 시스템에서 결정 권한을 가진 청년들의 수가 적고,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가 정착되지 않았기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하다.

■ 세부 정책 내용

- 세대 갈등 해결 전문가 의무 도입 (가정, 교육기관, 기업 및 노무 환경 등)
- 기업 및 공공기관 내 수평적 의사소통 기구 및 의사결정 기구 조직 및 상시 운영
- 자치단체의원 청년비례제 도입 : 전체 의원수 또는 지역 내 인구수 대비 청년의원 최소 비율 지정

■ 기대 및 파급 효과

- 세대 간 갈등 및 세대 내 갈등의 해소
- 청년 세대 소외 현상 해소 및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조직 운영

8.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 건설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성별이나 나이 등으로 인한 차이를 넘어선 차별과 편견, 폭력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 사이의 존중을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 사회는 이로 인한 갈등과 여러 사건사고들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평등과 안전은 사회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과 주변에서 이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업 및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 배치에서의 성차별 관행,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의 각종 성범죄가 그것이다.
- 우리 사회 곳곳에는 왜곡된 성인지, 문화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 온 차별과 배제,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있어서는 안 될 엄연한 폭력의 문제들이 만연하며, 사회 전반의 불신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 평등 교육, 다양성 교육을 통한 성차별과 성폭행 예방, 기업과 공공기관 관행 개선, 그리고 성범죄자나 미수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및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모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 자격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한다.

■ 세부 정책 내용

- 평등한 공동체
 - 초중고 정규교육 내 정기적 성인지 교육 실시 : 성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및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 교육, 생활 속 성차별 요소 개선 및 방지
 - 기업 및 공공기관 성차별 관행 개선 : 고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강화 및 성폭력 발생 시 처벌 강화,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및 양성평등 경영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마련 및 임금격차 해소
 - 대중매체 및 언론 미디어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및 강력한 개선 절차 마련, 성평등 콘텐츠 발굴 및 확산
- 안전한 공동체
 - 학교, 기관, 직장, 디지털 성범죄 조치 강화 : 성인지 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부/처/기관 연계 및 협업 강화. 성범죄자 처벌 강화
 -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 사적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가/지자체 차원의 보호, 분리, 대응 조치 강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정책 강화, 안전한 재생산권 보장, 청(소)년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접근성 보장
 - 1인 가구 : 매년 늘어가고 있는 1인 가구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역별 방법 조치 강화 및 피해 접수 시 즉각/장기적 대응 가능한 인프라 마련

■ 기대 및 파급 효과

-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건설해감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인간적 존엄 회복

9. 정신 및 신체 건강 지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예방적 차원의 선지원이 필요
 - 서울시에서 진행한 1:1심층상담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2021년 연 2,000명에서, 2022년에는 연 6,5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더 큰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정보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구조
 - 최근 청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단체가 많아졌지만, 각 지자체나 단체별로 산발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서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이 적지 않음에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알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부 정책 내용

- 직장에 속해 있지 않은 청년들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기 쉽지 않다. 모든 청년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에서 안내 및 홍보를 관리한다.
-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2년 주기로 변경한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양한 가족형태와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소외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지원한다.

■ 기대 및 파급 효과

- 복지사각지대를 줄여서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증진한다.

10. 미래세대의 생활공간으로써의 평화로운 한반도 구축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한반도 평화 컨센서스 구축에 청년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한반도 평화시대에 실제 살아가게 될 세대는 청년과 미래세대임. 그러나 북핵문제, 한반도 주요 국제정세 특히 통일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소외되어 왔음.
- 통일부, 통일연구원, 남북하나재단의 활동은 철저하게 행정 중심적이고, 시민 특히 청년들로 하여금 통일 담론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음
 - 통일은 미래세대의 삶의 문제고, 생활밀착형의 과제임. 그러나 대북, 통일 정책이 전문화되고 정치와 외교 관련 이슈로 다루어짐에 따라 미래세대 시민으로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공론장과 행정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함.

■ 세부 정책 내용

- 대북, 통일정책을 위한 예산 투자 계획, 남북한 문화 교류 등에 청년세대 참여를 보장
 -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과 이후의 한반도 생활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탐구에 청년세대를 적극 참여시킴
 - 남북한 청년세대 교류를 활성화하여 통일 이후 문화적 충격, 이질감으로 인한 혼란의 연착륙을 꾀함. 동독-서독 통일 전 인적교류와 이주정책을 활발하게 펼쳐 평화공존을 위한 초석을 깔았던 것에서 착안함.
- 남북한 공식 대화채널에 청년 별도 교류, 외교안보가 아닌 평화와 생활감각 공유의 대화의 장 마련
 - (제안1) 남북한 청년 교류 사절단 - (제안2) 판문점 청년의석회의 (assembly)
-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청년세대 - 국내 청년세대 간 교류 확대
 - (제안1) 북한이탈주민 중 대학 진학자 - 선주민 남한 대학생 간 멘토링으로 북한이탈주민 청년 적응 및 정착 실태를 개선함. 현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중 다수가 기숙사형 대안학교 등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등 청소년기부터 이방인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안2) 북한이탈청소년, 중국동포, 중도입국청소년 다양교육, 학습준비도 향상(기초학력보장)과 진로지도 확대. 한반도로 범위를 넓혔을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나갈 구성원임

■ 기대 및 파급 효과

- 미래세대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서 한반도 정치적 공동체를 직접 구상하도록 하여 통일정책에 참여를 높임
-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 중국동포, 북한이탈주민의 소외와 부적응 실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공동체 건설의 과제로 재설정
 - 교육정책> 교육복지> 다문화정책과 연계
 - 통일정책> 내국인 시민개선
 - 통일/ 복지정책> 북한이탈주민 지원

11. 미래세대의 생존공간으로써의 지속가능한 지구 보전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미래세대 청년이 살아갈 터전으로서 국토 환경, 나아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보전되어야 함
 - 2030세대 절반은 환경문제에 민감한 ‘에코워리어’(eco-warrior)로 분류됨. 청년들은 플라스틱 쓰레기 사용을 줄이려고 자발적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텀블러를 소지하는 등 다양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실천에 옮기고 있음
 - 현재 청년들에게 환경문제는 ‘하면 좋은 가치로운 것’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팬데믹을 불러올 수 있는 생존의 문제’로 그 심각성과 시급성이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
- 현재까지 환경문제의 범주와 의제설정이 국가단위 개발 이슈, 생태계 보전 이슈 등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음
 - 국가 단위 의제설정은 개인주의, 1인 미디어와 1인 소비단위에 익숙한 청년세대가 실천할 수 있는 생활영역과 정합성이 떨어짐.

■ 세부 정책 내용

-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 보고 및 계획 발표 시 청년세대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관련 청년세대 공청회 개최
- 도시 거주/ 농산어촌 거주 청년 맞춤형 환경 보전 실천 영역을 제시하고, 참여 시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속가능한 참여 체계 마련
 - 생활공간 환경보전 이슈를 정책으로 선정하고 에너지 순환, 에너지 절감, net-zero 운동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 정책 전달체계 단위를 개인 단위로 쪼개야 함

■ 기대 및 파급 효과

- 기후위기, 한반도 생태계 파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청년세대를 참여시킴으로써 환경주권을 보장함
 - 청년세대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팬데믹을 모두 생존의 문제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이러한 관심과 위기의식을 개인화된 불안에서 멈추지 않고 청년정치의제로 적극 채택함
- 환경과 생태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청년세대 정치 참여의 영역을 다양화하고 참여 주체의 규모를 확대함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 토지·부동산 분야 -

분야	토지·부동산
목차	1. 토지보유세 강화 2. 공공토지임대형 개발 3. 현재 공공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및 지분공유형 주택 공급 방식으로 전환 4.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5.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단체 및 담당자명	희년함께 (이성영 상임대표)
전화번호	02-736-4907
이메일	hgakor@hanmail.net

■ 토지·부동산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현재 대한민국은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양극화 심화의 핵심에는 부동산이 있다. 대한민국 상위 2% 세대가 전체 토지가액의 38.7%를 점유하고 있고, 상위 10% 세대가 전체 토지가액의 67.7%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소득 대비 부동산으로 인한 자본소득이 더욱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빈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부동산의 가치가 아닌 땅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지대추구를 근절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다.

지대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노력의 결과물인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한 지대추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토지가치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한 ‘토지보유세 강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가장 토지가 필요한 민간 주체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공공토지임대제’, 막대한 시세차익이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공공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및 지분공유형 주택 공급방식으로 전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원천차단 및 공직후보 인재풀 확보와 부동산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등을 통해 부동산에 만연한 지대추구를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지대추구 근절 정책을 통해 땅의 가치를 좇는 사회적 흐름을 땅의 가치가 존중받는 흐름으로 전환하여 투기와 거품 없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방과 서울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양극화 심화 및 계층 갈등

○ 대한민국 피케티 지수(자본/국민소득)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피케티 지수	8.2	7.4	7.5	7.4	7.4	8.0	7.9	7.9	8.1	8.3	8.8

- 독일(4.4), 미국(4.8), 프랑스(5.9), 영국(6.0), 일본(6.1), 스페인(6.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경향신문. 2020. 10. 23.).
- 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가 높기 때문.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지가는 4.57배인데, 이는 호주(2.91), 오스트리아(1.73), 캐나다(1.89), 핀란드(0.83), 독일(1.49), 네덜란드(1.79), 영국(2.82)보다 2~3배 높은 수준

○ 토지소유 불평등 현황

〈표 124〉 세대기준 상위소유자의 민유지 가액 점유율 추이(2006~2019)

세대 \ 연도	2006년	2012년	2018년	2019년	후세선	2019년 누적 점유율	세대 누적비율
1천세대 미만	1.8	2.2	2.1	2.2		2.2	0.004%
1천-5천세대 미만	2.8	2.8	2.6	2.6		4.9	0.02%
5천-1만세대 미만	2.2	2.1	1.8	1.8		6.7	0.04%
1만-5만세대 미만	8.8	8.6	7.4	7.3		14.0	0.2%
5만-1십만세대 미만	6.2	6.8	6.2	6.1		19.1	0.4%
1십만-5십만세대 미만	21.8	20.7	19.6	19.6		38.7	2%
5십만-1백만세대 미만	13.0	12.7	12.4	12.4		61.1	4%
1백만-5백만세대 미만	34.2	33.9	34.8	34.6		85.7	22%
5백만-1천만세대 미만	9.3	10.6	12.1	12.1		97.8	44%
1천만세대 이상	0.1	0.8	2.0	2.2		100.0	100%
합 계	100	100	100	100			

- 상위 2% 세대 전체 토지가액 38.7% 점유
- 상위 10% 세대 전체 토지가액 67.7%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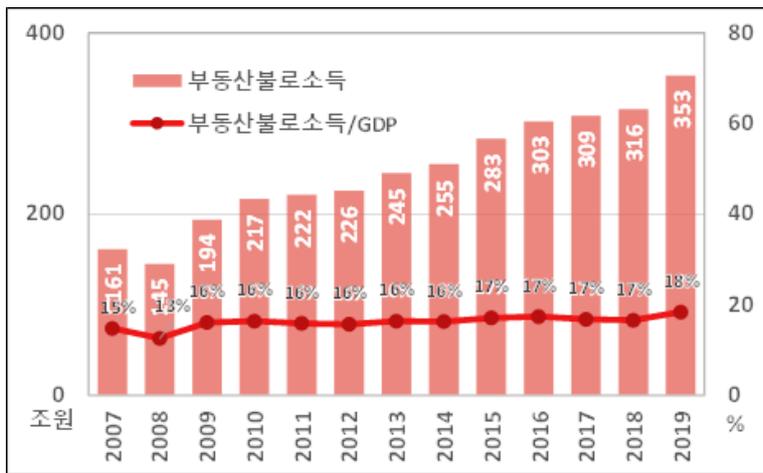
○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 추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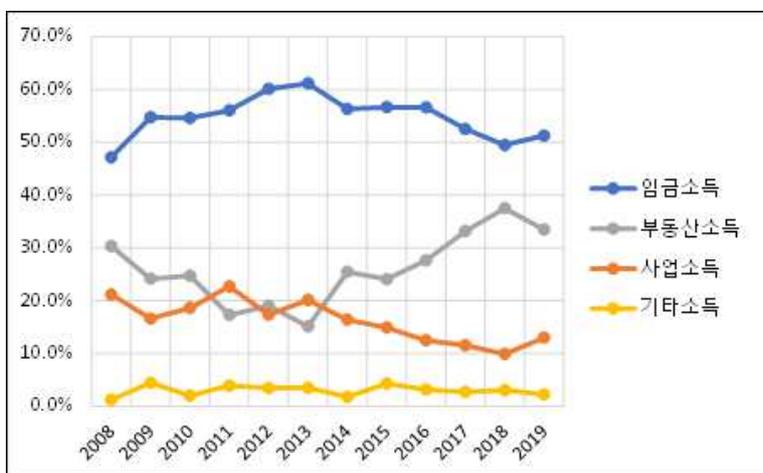


-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연간 1억 이상의 자산소득 발생

○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 및 소득불평등 영향



<그림 1>
부동산 불로소득(실현 자본이득+순임대소득)
추산 결과



<그림 2>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18)

○ 주거양극화로 인한 혐오 및 계급화 심화

"일단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집값도 나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학교 내에서도 그 단지에 산다고 한다면 차별화돼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거죠."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中, 20.08.06)

- 엘사, 빌거, 휴거, 월거 등 초등학생들에게 주거계급화 및 혐오현상 전이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 인구감소 속도 가속화

- 통계청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인구감소 시점을 2032년으로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는 인구감소 시점을 3년 당긴 2029년으로 발표
- 2020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84 OECD 국가 중 최저

○ 인구감소가 만들어내는 피해의 강도는 지역별로 다름

- 인구감소가 가져올 피해는 일자리와 청년이 많은 수도권보다는 일자리와 청년이 적은 지방이 더 크게 입을 수밖에 없음.
- 대한민국 전체 단위에서 인구감소가 일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은 지역에서 몰려드는 인구로 인해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

○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 수도권 190만호 이상 주택 건설

- 1990년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이후 최대 물량
- 주택이 부족해서 공급한다기 보다는 투기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대규모 공급 진행
- 수도권 190만호 대규모 주택공급은 투기 심리 가라앉은 후 수도권 집중 가속화 가능성 높임. 2018년 전국 빈집 142만호 존재.

■ 세부 정책 내용

1. 토지보유세 강화

- 지대추구 근절을 위한 기본 철학,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지대추구의 본질은 아파트 가격이 아닌 건물 아래 있는 ‘토지’
 - 감가하는 건물과 달리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이유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요인 : 정부의 용도 전환 인허가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 인구집중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 등
 - 지대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의 결과물인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철학이 담긴 세금 정책, 토지보유세
 -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연간 토지임대료 수준의 세금을 걷는 토지보유세는 부작용 없이 지대추구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
 - 한정된 자원인 입지 좋은 땅을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배분하는 최적의 방식
 - 가격 통제 방식이나 거래 시 부과하는 세금은 다소 부작용이 있지만 토지 보유시 매기는 토지보유세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대표적인 정책
- 투기와 거품 없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투기적 토지불로소득 추구사회가 아닌 땅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
 - 지대추구로 인한 근로의욕 감소, 사행심 만연을 토지보유세, 거품경제·세습경제 해체와 한국경제 역동성 회복의 토대
 - 지대추구가 만들어내는 부동산 가격 거품은 경기 침체 및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 높임. 지대추구를 원천 차단하는 토지보유세는 투기와 거품없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
- 지방과 서울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토대
 -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된 토지가치 상승분. 토지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지방거주자들도 서울 주택 매입
 - 토지보유세로 거둔 세수를 복지재원이나 지역균형발전 재원 또는 전국민 토지배당으로 사용한다면 토지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토지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부를 옮기는 효과 발생
 - 토지보유세 강화와 전국민 토지배당을 결합한다면 지대추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수요를 낮추고, 지방주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지방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 발생
- 토지불로소득 극대화를 위한 가구 분화 및 주택 과소비 방지
 - ‘다주택자 투기꾼, 1주택자 실수요’ 프레임 속에서 1주택자 대출 및 세제 혜택 제공
 - 아파트 자본이득이 큰 상황 속에서 가구 분화 및 증여, 매입 활발
 - 토지보유세 강화는 각자의 필요에 적합한 주택가액 및 면적을 선택하도록 하여 1인가구 주택 면적 과소유 및 과소비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방지

2. 공공토지임대형 개발

- 토지불로소득 유발형 개발을 토지불로소득 차단형 개발로 전환
 - 대장동 사건이 보여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민낯, 토지불로소득 유발형 개발
 - 택지 조성 후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이 보유하며 민간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택지개발사업 전환
 - 토지불로소득 원천 차단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와 함께 위치가 좋은 지역의 토지는 지속적인 토지임대료 수입의 확보로 인해 정부재정 보조 효과 발생
- 북한의 체제 전환 시 적용 가능한 토지제도 롤모델 제시
 - 자본형성과 생산 의욕을 억제하거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운데, 사회에 유익한 정부활동에 필요한 수입을 조달
 - 토지 및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거나 기본소득으로 배분하여 분배의 형평성 강화
 - 토지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개인과 기업들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토지임대료 수입은 노동소득, 기업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어 노동의욕과 기업투자 등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 가능

3. 현재 공공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및 지분공유형 주택 공급 방식으로 전환

- 자가와 임대 사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
 -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시세보다 대폭 저렴하게 분양하는 현재의 분양 방식은 수분양자에게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을 몰아주는 ‘로또 분양’ 방식임.
 -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고 매각시 정부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자가와 임대 사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 사행심을 부추기는 ‘로또 분양’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
 - 공공임대주택 혐오의 가장 큰 원인은 공공임대주택이 내집값을 떨어뜨린다는 편견. 집값 상승분이라는 시세차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시세차익분을 줄일 수 있다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혐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음.
 -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의 경계가 모호한 주택이 많아지면 임대주택에 대한 혐오도 희석되는 효과

4.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체 다양화
 -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 및 관리하며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대 10년간 장기로 임대하는 사회주택은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형성 및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수익극대화가 아닌 ‘주거안정’, ‘토지공공성 확보’, ‘대안주거모델 제시’ 등 사회적가치와 적정한 수익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활용한 주택 공급 생태계 다양화 필요
 -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관리까지 하면서 발생하는 슬럼화,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의 문제 효과적으로 해결
 - 투자상품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임대사업자로서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주체 적극 육성

5.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 국민들 10명 중 6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불신(2019년)
 -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이 강남에 주택 소유
 -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수익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정책 불신 커짐
-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도입을 통한 정책신뢰도 확립 및 정책입안자 이해관계 충돌 방지
 - 부동산 정책과 고급 개발정보들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들은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백지신탁하여 자신의 부동산 소유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
 -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부동산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
 -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서민들의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초석 마련
- 토지불로소득 환수의 당위성 확보 및 공직후보 인재풀 확보
 - 부동산 투기는 나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부동산 투자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시발점
 - 공직 후보의 인재풀을 보호하고 공직자들을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효과
 - 실수요를 증명하지 못한 투기용 부동산은 백지로 신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에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오를 가능성 높임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 한반도 분야 -

(대북관계/통일/평화)

분야	한반도 (대북관계/통일/평화)
목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평화 담론의 개발 및 확산2. 종전선언 추진3. DMZ내에 남북경제교류센터(Inter Korean Exchange) 제안4. 외국인 대상 한반도 평화 투어리즘5. 한반도 보건의료·재난협력기구 창설(기 제안)6. 탈북민 소득보전 및 일자리 창출7. 남북 간 연락 및 송금제도 개선
단체 및 담당자명	윤환철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번호	010-5341-0008
이메일	ynhc@nate.com

■ 한반도 (대북관계/통일/평화)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 통일담론의 개혁 - 평화 우선의 통일론

남북 당국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공존과 평화로운 상호관계를 공식화하고 있다. 물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통일원칙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각각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소모된 ‘평화’ 개념은 남북한 내부사회에서조차 유통이 금지되었고 오히려 도발과 대결 논리만 강화된 역사가 있다. 2022년은 38° 선 분단 77년, 휴전선 재분단 69년을 경과한다. 남북한의 인구 구성, 정치적 책임도 전후 세대로 채워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전후 세대의 협력체가 체제의 저자(著者)이므로, 앞 세대가 창안한 개념의 진정성을 당대가 이어받고 변화된 한반도 내·외의 상황과 자신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새로운 담론과 개념을 창안해야 한다.

‘통일’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나, 전쟁을 불사한 목표로, 혹은 능동적·수동적으로 상대방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그 이후 수순을 배열하는 일로 규정될 때는 ‘평화’의 가치와 충돌한다. 남북 모두 이러한 개념의 혼란을 충분히 겪어왔다. 이제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가 수식하는 ‘통일’, 평화 우선의 통일론으로 공식화하고, 역진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 남북 간 왕래의 양적 성장 - 양을 줄이지 않는 접근법

문제인 정부는 평화 지향적이며 북한과의 대화에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저조하였으며, 이는 이산가족들의 인권문제, 개성공단 등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남북 교류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응하지 않은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 더 크다. 우리 정부의 과제는 이미 확보된 교류의 양을 줄이지 않고, 새로운 교류의 차원을 추가로 열게 될 접근법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에서 상호변영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며, 기실 평화와 통일의 본질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교류가 없다면 통일이나 평화는 무의미한 것이다. 차기 정부는 개별 사업의 구상, 대북 협상, 정책의 변경 등 대북정책 전반에서 그 결과나 영향으로 남북 관계의 양이 줄어들 가능성을 차단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 평화를 지지하는 국제관계 형성

미국에서도 가장 난해한 정치인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 나서도록 한 것은 외교사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 야망과 그 행정부의 구성인물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략 국무부는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스몰 딜’(단계별 접근)을 주장하였고, 존 볼턴과 같은 전쟁선호세력은 회담의 결렬을 목표로 불능의 접근법인 ‘빅 딜’을 고집하였다. 볼턴은 일본 수상 아베가 그 배후에 있었다고 고백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국을 라이벌로 설정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이 동참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도 동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주요 인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의도와 이를 따르는 주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손실을 줄이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응의 순발력, 외교적 설득 능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브레인(싱크탱크)과 엘리트 층, 의회의 영향력 있는 의원, 외교관과 관련 학자, 방송, 여론 형성층의 일반인을 타깃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전략을 펼쳐야 한다.

□ 생물학적 위기, 분단 불가능한 생태계

생태계의 분단은 불능이다. 조류독감, 돼지열병, 말라리아는 남북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이슈이고, 미세먼지(황사),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는 공동대응이 아니면 무의미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는 폐쇄성이 확산을 막아주는 지엽적 효과가 있었지만, 비생태적 분단을 전제로 한 것이며, 북한의 과잉 대응으로 월북자를 살해하는 비극이 있었다. 결국 코로나도 왕래를 전제로 한 협력적 대응이 최선인 것이다.

남북한 당국은 하나의 생태계인 한반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위한 협력만큼은 정치적 상황과 완전히 분리해서 상설화 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를 위해 공동의 기구나 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절실하다.

□ 탈북민 정착지원

최근 2년간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2019년 1,047명, 2020년 229명, 2021년 9월까지 33명) 분단 이후 총 입국자는 33,785명이지만 사망, 국외이주,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 등을 제외하면 29,500명 내외로 추정된다. 통계상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초중등교육 중단율 등은 개선되었으나, 기존 국민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주당 근로시간 격차 +18.7% 임금 격차 -19.4%). 적은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나 일거리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증가하고 있다.(코로나 영향 추정)

‘탈북배경청소년’(제3국 출생, 국적선택 이전인 탈북민 가정의 자녀) 문제도 대두된다. 북한에서 태어나 본인이 탈북민 지위(국민)를 가진 경우 초중고~대학까지 학비 면제, 대학 특례 입학, 병역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제3국 출생자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가족의 학습지도능력, 주변 네트워크, 정서적지지 등의 측면에서 취약하다. 2020년 현재 탈북민 가정의 제3국 출생 자녀는 1,530명으로 탈북민 자녀 907명의 약 1.6배이다.

탈북민들은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남아있는 가족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실향민이다. 이들은 주로 브로커들을 통해 북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통화하고 있으며, 자신들처럼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송금 수수료는 30%에서 40% 까지 치솟았으며, 국경을 넘겨주는 데 요구하는 비용도 크게 올랐다. 그나마 높은 비용을 지불해도 성공하는 경우가 적으며, 실패한 뒤에도 약속한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가보안법은 탈북민이 북에 있는 사람과의 통화나 접촉, 송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평화 담론의 개발 및 확산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비평화적 통일 담론, 평화적 과정을 간과한 통일 담론이 남북 관계 진전을 가로막거나 필수적 남북 교류를 거부하는 입장을 재생산하고 있음.
-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천명하고, 각종 하위 법에도 명시한 평화 우선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정책 내용

- 한반도의 평화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대학 내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 '통일 철학' 연구 및 저술 지원
- 각 연구와 저술은 반드시 대중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지표로 평가하고 보상
- '국민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화 지향의 지표로 평가하여 저작자들과 양방향 소통
- 평화 선행 정책

■ 기대 및 파급 효과

- '전쟁'이라는 의미로 '통일'을 내세우는 반평화적 담론 축소
- 당대와 미래세대가 통일 철학과 정책을 주도

2. 종전선언 추진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전쟁을 종결하는 절차의 첫걸음이 '종전선언'이며 이후에는 '평화의 현실'이 이어진다. 한·중 관계와 같이 평화로운 관계(현실)가 종전선언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 남북 간, 북한·중국 동맹과 한·미를 위시한 UN군 간 관계는 종전선언 없이 평화적 현실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군사적 대치가 삼엄하고, 막대한 군비를 소모하고 있으며, 상호의 군사행동에 대한 비난과 경고가 이어지는 등 평화가 부존재하는 현실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 북측이나 남한의 보수적 정파가 평화적 현실이 없는 종전선언을 우려하는데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하지 않은 일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공허하다. 종전과 이후 평화 관계의 진척을 선언하는 것이 평화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평화의 선언과 평화의 현실을 모두 갖는 것이 온전한 평화임을 알고 있다.

■ 세부 정책 내용

- 전쟁의 종결에 대해 공론장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공감대 확보
- 종전선언을 위한 외교(중국·미국 등) 및 대북한 협상
- 상징적·실질적 평화조치들을 도출하고 이를 진척시킴, 특히 남북 간 군비축소를 위한 회의체계, 실행·검증 체계를 상설화
- 군축 조치들에 대해 주변국들의 검증참여(객관적 확인 및 세계 여론 전파)
- 선후를 뒤집는 반대여론(예, 일본의 납치자 선해결 요구 등)에 대해 맞춤형 대응

■ 기대 및 파급 효과

- 분단비용의 감소, 남북 관계 확대
- 코리아 브랜드 가치 상승
- 민간·비군사·정치 부문의 교류, 발전의 토대가 됨

3. DMZ내에 남북경제교류센터(Inter Korean Exchange) 제안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한반도의 남북 지역은 상호 교환 없이는 윤택하게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생태계, 문화권을 갖고 있음.
- 남북 간 물류가 중국 등의 중재를 거치면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고, 정작 남북 주민들의 이익은 축소되어 왔음.

■ 세부 정책 내용

- 생태계 기능복원의 첫 단계로 제한된 남북 간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등을 교환하고 더 나아가서 용역, 서비스 등의 중계기관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장터를 현실화
- 남북한은 이미 개성공단의 출입관리, 협력생산 경험을 갖고 있으며, '남북연락사무소'는 협력의 첫 단계였음. 이의 복원과 함께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있음.
-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변화 추이에 맞추어 물물교환, 무역절차에 준하는 결제 및 보험제도, 통관제도 등을 서비스할 필요가 있음.

■ 기대 및 파급 효과

- 남북 간 공동 이익이 발생하므로 거래 지속유인이 남북 교류의 양적 증가를 불러올 수 있음.
- 국제 사회에 평화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분단 유지를 바라는 세력들의 정책을 전환시키는 데 간접 기여
- 기능적 협력과 부분적 통합이 여타의 분야로 확산(spill over)될 수 있음.

4. 외국인 대상 한반도 평화 투어리즘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주변국(특히 미국, 일본)의 정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론 형성이 필수
- 자유주의 국가들은 시민들이 곧 여론이며, 파급효과가 높은 직군(언론인, 연예인 등)과 미래의 평화담론을 기대할 수 있는 청소년, 대학생 등을 한반도 평화 우호세력(서포터즈)으로 확보할 필요.
- 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는 양국 젊은이들의 접촉지점을 두고 끊임없이 평화의 중요성을 나누도록 함으로써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기존 ‘참전용사’ 초청행사 등이 과거지향적 태도에 그치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

■ 세부 정책 내용

- 매년 일정수 이상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분단 현실을 알리면서 필수적으로 평화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유도
- 같은 또래나 직군의 내국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호 증진(사전 교육 필요)
- 정례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통일부 평화센터) 이용 혹은 ‘평화 리조트’를 건설하고, 최근 개척되고 있는 DMZ평화 루트 등을 활용
- 세미나 내용 중 분단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역할과 결과, 영향을 상세히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수(자국에서는 가르치지도, 알리지도 않고 있음)
- 세미나 이후 콘텐츠 파급을 위해 영상제작, 배포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체제 필요.

■ 기대 및 파급 효과

- 주요국들의 한반도 이해가 증진되며, 몰이해로 인한 정책 오류, 자국 책임 인식이 제고됨
- 이 효과는 미래세대로 갈수록 확산될 수 있음.

5. 한반도 보건의료협력기구 창설(기 제안)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남북한 공통의 보건의료 이슈 발생(동북아 전체 범위도 발생)에 따라 협력하여 공공보건의 목표에 접근할 필요성 대두
- 한반도 생태계의 연결성(토지, 수계, 대기, 기상·천문, 자원 등)을 인식하여 공동관리, 재해예보 및 예방활동 체제 필요

■ 세부 정책 내용

- 남북한 전문가, 관료, 시민 등 일정 비율의 대표성을 분배
- 보건의료 및 재난의 공동대응,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
- UN관련기구들과 정보교환, 지원호소 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등의 지원, 협력생산 및 분배 체제 구축
- 남북 공동수계관리를 위한 협의체 및 연락, 제어체계 구축

■ 기대 및 파급 효과

- 한반도 전체의 보건의료·재해예방 수준 상승
- 동북아 보건의료 협력에 기여
- 물자 및 인력, 서비스 교환경험 축적

6. 탈북민 소득보전 및 일자리 창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탈북 정착민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기존 국민들보다 18.7% 많고, 임금은 19.4%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민들은 더 많은 시간 노동할 기회를 원하고 있다.
- 건강 문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한 탈북민들의 소득은 더욱 적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네트워크와 경험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가족 전체의 취약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 세부 정책 내용

- 입국 후 10년 이내의 탈북민들에 대해 근로의욕에 상응하는 소득보전(근로장려세제 등 경험), 취약성 평가를 통해 지원 비율등을 조정하여 적용
- 공공근로 등 임금노동 기회에 우선권 부여(기존 공공근로 불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한 공공근로를 개발)

■ 기대 및 파급 효과

- 탈북민의 생활형편 개선
- 탈북민의 건강권 실현 제고

7. 남북 간 연락 및 송금제도 개선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탈북민들이 북의 가족들과 통화하거나 송금할 때 과도한 수수료율(30~40%), 낮은 신뢰성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법적 제약(외국환거래법, 국가보안법)은 거의 사문화 되었으나 류우성 사건 등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유가 되는 등 실효성, 도덕성 문제가 있다.
- 정치·군사적 대치 상황의 남북한은 각 구성원의 상대방 구성원과의 대화, 나눔 등을 불법화 할 수 있으나 가족 간 연락과 상호부조를 방해하는 규제나 금지는 반인륜적 현실이므로 이를 극복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세부 정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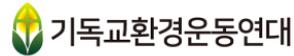
- 북한 당국과 협의를 제안하여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게 하고, 연락과 안전한 송금 절차를 고안하되, 정치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남북의 법령을 수정하도록 한다.
- 송금 절차에는 수령하는 측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검증하는 장치도 함께 고안하도록 한다.
- 적정 수수료와 통화료 등을 책정하여 제도 수립 및 유지에 충당한다.

■ 기대 및 파급 효과

- 탈북민, 실향민의 인권개선
- 브로커 등 신뢰할 수 없는 절차와 관계 감소
- 외환관리 질서 개선

■ 참여 그룹 소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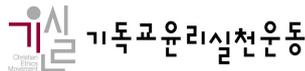


산업화로 인한 공해가 사회 문제로 등장한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997년부터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부설기관인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와 함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를 푸르게 가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http://www.greenchrist.org>

02-711-8905 greenchurch@hanmail.net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청년운동/ 청년센터WAY/ 좋은나무 웹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https://cemk.org>

02-794-6200, cemk@hanmail.net

기독교법률가회



법률 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기독교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법률가들의 운동입니다.

<http://www.clf.or.kr>

010-2886-6112 clfkorea@gmail.com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는 노동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눈물로 보듬어 안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소외되고 억압당하는 노동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https://www.ydpuim.org>
02-2633-7972 ydpuim@gmail.com

좋은교사운동



기독교사를 깨워 좋은교사로 세우고 기독교적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책임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직사회를 만들며 교육과 사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기독교사 단체 연합운동입니다.

<https://www.goodteacher.org>
02-876-4078 jimgal@naver.com

희년함께



희년함께는 모두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지공주의(地公主義)에 기초한 토지가치세제(Land Value Taxation)를 실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를 세우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하도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희년에 기초한 공정국가대안체제로 통합하도록 힘쓰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ndliberty.org>
02-736-4907 hgakor@hanmail.net

윤환철 연구위원

(현)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전) 남북나눔운동 교육국장

ynhc@nate.com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공약 제안 기독교시민단체연대